

第1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2. 9. 25 ~ 9. 2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9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	95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
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1
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7
마) 본청 노후배관 교체및 수선공사.....	115
바) 본청수선 공사 미집행 현황.....	117
사) 입찰현황.....	119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25일 (금요일) 14시 30분

의 사 일 정(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복위원외 3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병해위원외 3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4시 31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첫번째,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 9월 7일 장충호 교육위원님의 세분의 발의로서 집회요구가 있어, 교육위원회 공고 제92-10호로 9월 17일날 공고되어, 오늘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3회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조치결과입니다.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신 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즉, 집행청과 각 정당, 경제기획원, 교육부 등에 송부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금회, 제14회 처리안건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4일 박병해 교육위원님의 세

분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 9월17일 김응복 교육위원님의 세분
위원이 발의하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동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을 합하여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2.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박병해 교육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응복 교육
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행정에 관

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응복 교육위원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사회대로 나옴)

○ 김응복위원 : 김응복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1992년 9월 26일 11시와 9월 28일 14시로, 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 관리국장, 기획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응복 교육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병해 교육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나, '92년 9월 17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편의상 의사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국장 이근수 :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주요 골자와 참고 법령, 그리고 개정 조례안의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92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평균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교통

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를 평균 10% 인상하고,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에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참고 및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로, 유인물 6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참조)

뒤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청주시내에서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한 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별표 1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본 기준표의 구분별, 운임별 내역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금액 및 부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쪽,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개정사유로는 '91

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92년 7월 3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의안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용어 정의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의 용어 정의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개정근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뒤에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사담당관"의 명칭이 "의사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안이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위원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들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6.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사유는 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의 물량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교육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 2천

28평방미터를 증축할 예정이고, 토지 3천 308평방미터, 건물 277.4평방미터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새책로 제안근거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참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별첨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10시

의 사 일 정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의안 의결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 의 된 안 건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답변

(10시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

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어제 9월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이 있으시겠으며, 또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p>이상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0시01분)</p> <p>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p> <p>(의사봉 3타)</p>	<p>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 style="text-align: right;">(10시02분)</p> <p>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같은 내용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석 잠시 침묵)</p> <p>질의 없으신가요 ?</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p> <p>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p> <p>(위원석 잠시 침묵)</p> <p>반대토론 없으십니까 ?</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반대토론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p> <p>(위원석 잠시 침묵)</p> <p>이의 없으시죠 ?</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10시02분)</p> <p>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같은 내용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두 안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p> <p>(위원석 잠시 침묵)</p> <p>질의 없으십니까 ?</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p> <p>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p> <p>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석 잠시 침묵)</p> <p>반대토론 없으십니까 ?</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답변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의사봉 3타)

본 질문은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초·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처리하고 남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진행은 일괄질문을 한 후에 부서별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문 요지는 학교에 고용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용권자는 누가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을 보며는 한 학교에 뭐 10년도, 20년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이동이 안되는 그런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동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고 해서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직자라고 하면 그것도

어떤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다 더 능률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항으로 " 학교내 잡부금이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 일체의 잡부금을 걷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잡부금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국민학교에는 어떠한 잡부금, 말하자면 차모회비라든가 또 무슨 명목이라든가, 운동회때 찬조금이라든가, 그런 유형들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하여금 일체의 잡부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유형에 무엇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이재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유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무과장님 한테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행정관서에서는 예산 10% 절감운동,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

데, 여름방학 동안에 진천야영장을 가봤더니 식당등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그 아까운 적벽돌을 한 2,000여장 부셔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벽돌 2,000장이니까 문제가 아니지 그 이상의 엄청난 하자였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보수도 받을 수 없어서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는 내용년수의 10분의 1도 못가서 보수가 되는 이러한 공사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그 조치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은 홍신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신희 위원 : 예, 홍신희입니다.

과거에 우리 학교 설치의 위치라는 것은 대개 도로변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해 봤는데, 요근래 사회가 산업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동차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는 비행장 같은 이런 시설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의 교육환경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비단 몇군데가 아니라 전도에 거쳐서 상당한 많은 학교가, 특히 도로변에 학교들은 교통량이 폭주하면서 생겨나는 그

소음 때문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고, 또 그 앞길을 횡단하는데에도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혹, 고속도로변 같은 데 보면 방음벽을 설치한 것도 눈에 띄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일제히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연 차량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몇 개나 되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요전에 충주에 교육감님하고 의장님이 함께 참석하신 모임에서, 충주에서도 비행장 소음 때문에 목향리 쪽의 학교가 엄청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대책은 없는가?" 했더니, 교육감님 말씀이 하늘에다 차양을 쳐서 가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 난처하고, 학교를 옮길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예산은 없고, 그래서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기자가 우리 지방지의 어떤 칼럼란에다 쓴것을 보고서 걱정을 하면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줄은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런 상황에서의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 김영세 : 예, 김응복 위원님 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김응복입니다.

요즘에 책가방 이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서 아이들의 자세가 여러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으로, 가령 척추가 좀 구부러 진다든가, 어깨가 올라간다는가, 더욱이 아이들 영양 섭취가 좋아서 그런지 잘못 영양을 취해서 그런지, 하여간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그중에 제일 문제가 책걸상이 혹 아이들 자세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학생용 노후책걸상 대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요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2학기도 거의 다 지나가는 무렵인데 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체 실적은 어떤가, 그리고 학생 체위에 맞게 책걸상을 조정하였는가,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일선 교육청, 그 다음에 일선 학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흔히 보면 아이들이 연초와 연말에는 차이가 굉장히 나서 연초에, 학기초에 맞춰준 책걸상 높이가 연말에는 체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실제적으로 가령 책걸상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면, 배치할 적에 새것은 새것대로, 그만 체위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새것은 새것대로 한 교실에 다 모아요.

그러니 체위에 맞추려면 천상 새 책걸상 중에 안맞는 자는 현 책걸상이라도 놓고서 체위에 맞춰줘야 할 텐데, 책걸상 새것은 새것대로 몰다보니까 그러한 체위에 맞추는 것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책걸상을 체위에 맞추도록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도 요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잡부금 관계 때문에 그 대체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육성회비를 몇 백 \$로 올린다고 했다가 그것이 부결된 사항도 보고, 현재 일선학교에 잡부금을 금지하라는 대책으로서의 사후 대책이 사실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참, 실례로 하나 보더라도 운동회 하는데 기부금 하나 못받게 해서 요전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 불평이 보통 아닌걸 들었어요.

말하자면 오기로 한다는 거예요, 오기로. "비가 오는데도, 왜 비가 오는데 하느냐?" 이랬더니 오기로 해치운다는 거예요, 오기로.

이만큼 반발심이 있는데, 잡부금 일체 근절과 거기의 대책으로서 육성회비 활성화 시책에 따른 본도로서의 예상 문제점이 아마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구상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은 김사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김사수입니다.

먼저 8월12일에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본 청 냉·난방 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직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도 있고, 또 부족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의 답변중에 총 설계금액이 6억 2,05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온방에 필요한 공사비가 얼마이며, 또 배관, 화장실, 기타 전기공사, 관급차재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항목별로 소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아마 관리국장 답변보다도 실무를 다루시는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설과장에게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액 입찰을 했는데, 그 총액 입찰 금액의 설계금액이 5억5,9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받아서 잠깐 검토를 해 봤더니 냉방공사는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냉방공사를 이번에 하지 못하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 총액입찰을 이왕 했으면, 또 그리고 앞으로 냉방 공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총액입찰의 취지에 맞게 냉방공사 금액도 포함을 시켜서 총액입찰을 봐야 옳지 않겠느냐, 대개 총액입찰의 취지가 분할 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절약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총액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냉방공사를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나 냉방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확보면에서도 그렇고, 총액입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개 석상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리국장 답변에 예산 부족액이 1억2,648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용 예산을 예산조치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공사이고, 또 이렇게 다 뜯어놓고 지금 안할 수도 없는 것인데, 부족 예산액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부족액을 좀 내서 이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박병해입니다.

숙직제도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로부터 일·숙직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도에도 그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또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또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첫째 '92년도 이후에 교육청 발주공사의 내역으로서 1억원 이상의 공사내역을 해달라고 하여, 자료를 받아서 여러가지 분석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일이 없을테지만은 타 시도에서 하도 말썽이 많고, 메스컴에 보도가 되는 내용이 참 굉장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럴 일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좀 의심나는 것,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 몇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38건이라는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등록업체 수 전부가 92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38건이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등록업체 수가 보통 많이 들어올 때에는 49개업체까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응찰하는 회사는 평소에 2-3개 많아야 5-6개, 회사만이 응찰을 하는데, 어째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수가 최고일 때 49개업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평소에는 그것 밖에 안될까 하는 것이 제가 의심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명성기업하고 삼풍토건하고 신흥건설을 보니까, 낙찰률이 98%가 넘습니다.

그러면 과거 5년내에 이 세계의 기업체가 한 공사중에서 하자가 있는가, 물론 없겠습니까마는 하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가 '91년 12월19일날 명성기업에 낙찰 됐는데, 이때 등록 업체수가 1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응찰업체가 5개 업체로 줄게 된 그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서 등록은 12개 업체가 했는데, 실제 응찰은 5개로 줄었는가.

그 다음에 낙찰률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8%이상, 38건중에서 32건으로 84%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낙찰률이 높다고 하는데에서 우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리가 없겠습니까마는 타 시도의 예로봐서 업자들끼리 어떤 담합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실패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럴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서 묻습니다.

시중에 유포된 얘기가 설계 회사에 용역을 줄때, 설계를 용역할 때, 교육청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α)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없으리라고 보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첫번째 제일 큰 질문은 그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제가 봐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먼저도 우리가 결의문을 한번 작성해서 보냈습니다마는 특별소비세의 사회 간접자본 목적세화에 따른 충북교육 예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좋은 방안은 어떤가?

세번째는 육성회비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번째는 현행 사학재정 지원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며, 물론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원방법도 또 원칙이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작정 사학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기준도 없이 막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원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12회때 질문하려다 못한 것인데, 학생수 증감 및 교육공무원 임용 증감수 현황표를 받아 봤습니다.

'83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서 인력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것

인지, 이것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잡무 부담현황을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잡무인지, 실제 가보면 교원들의 잡무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참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도 "잡무가 많다; 특히 그 소규모 학교는 할일이 너무나 많아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규모 학교 같은 데서는 선생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관장 사무가 조금씩 밖에 안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끝신(실내화)담당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소규모 학교, 6학년같은 조그만 학교에서도 보고사항은 큰 학교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의 필요성, 물론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어느만큼 필요한가, 적절성 그 여부도 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시책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찬조금을 받는데, 그 접수창구에 우리 충청북도 접수 현황이 얼마전 신문에 각 시군교육청 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묻습니다.

그래서 참 편법이라고 할까, 이동창구도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 직접 가서 찬조금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것인데, 어떤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예를들어 운동회를 한다든가, 혹은 앞으로 국민학교는 운동회가 다 끝났지만 10월달에는 중·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을텐데, 그때 교육청에서 장학사나 혹은 관리과의 직원을 하나 파견해서, 그곳에 출장을 보내서 이동창구를 개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순수한 찬조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8년부터 '92년도까지의 교육청 발주공사중 하자보수기간내 보수공사 실적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년부터 '92년도까지의 시설사업중 현 시점에서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가 있는가, 하는 내역을 소상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 신문에 나기를 " 장기교육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위원이 인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구상이 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본 구상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은 중요한 장기발전 계획인데 우리 교육위원회 하고는 어떠한 관계인가, 어디까지가 관계

가 되는가, 우리 교육위원들도 무슨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혹은 교육위원회는 관계없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한계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2년도 산하기관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 내역을 좀 소상히 알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세 : 다음은 장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장충호입니다.

저는 폐교된 학교 재산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간 수차 논의된 바도 있지만 저도 제가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폐교 수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 안이 수립되어야만 이 국가재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서 대로 말씀을 드리면, " 폐교된 학교재산 관리의 개선방안은 그간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었는지요?" 그동안 상당히 시간이 걸렸으니까 뭔가 근본적인 개선안이 창출되었는가 해서 그것을 여쭙보고 싶고,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지금 폐지된 학교를 예산없이 방치해 둔다면 화재와 파괴·훼손, 또 요즘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내에 그간 폐교된 학교가 몇 개교며, 그동안에 매도 또는 임대한 실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몇 개교가 매도가 되고, 몇 개교가 임대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계획된 의사일정은 오늘은 질문만 하고, 28일에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을 변경해서 한 시간 먼저 시작이 되어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집행청의 관계관들도 12시까지는 우리가 마감을 해드려야 할 이런 사정이요 해서, 12시까지만 답변을 오늘 계속 하고, 나머지는 월요일, 28일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11시00분)

○ 의장 김영세 :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소관별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소관별로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그냥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현장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식당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설계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감독 불충으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수공사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의 식당은 '88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3년이 지난 금년 봄부터 건물 측면의 외부 벽돌이 가라앉고 균열이 발생해서, 약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은 당초 설계시 외부 벽돌의 턱이 미관상 이유로 지중에 설치하면서 약하게 설계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저는 500만원까지 보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500만원 공사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학교건물 짓는 것이 연습이 아닙니다.

한번 시공하면 내용년수 이상 보존이 되어 되는데 불과 적벽돌 공사가 3년만에 하자가 생겨서 500만원씩이나 보수공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하자보수만 할 것인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다든지, 보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변상책임이 있으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 이재희 위원 : 아니 글썄,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물론 문제가 없는데, 이처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 국고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3년만에 이와 같은 손해가 났을 때, 필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 사건 말고 앞으로 유사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일반적인 관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지금 업자한테 하자가 있으면 변상까지도 물리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아니,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못 물리는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이재희 위원 : 그런데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500만원을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그렇습니다.

○ 이재희 위원 : 그런데, 이러면 결국 이와 똑같이 하자가 생기면 보수공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설계자가 잘못 했으면 설계책임자이고, 시공이 잘못 됐으면 시공자이고, 변상뿐 아니라 신분적

인 어떤 책임도 져야 될 일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데 이제까지의 관행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그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도 설계나 공사감독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고한다든지 해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형공사, 정부공사가 하자가 발생해서 도과 되었을 때에도 저희들이 시설계장들을 모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신분상 조치도 하겠다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그리고 이어서 홍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이나 철로변 등 학교의 소음공해 현황 및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음대상 지역 학교는 65개 학교였습니다. 마는 그중 63개에 대해서는 이중창 설치, 방음벽 설치, 또 학교 이전등을 추진하여 소음피해를 많이 완화 했습니다.

그리고 2개 학교인 음성여중은 철도 소음

이 심하고, 주덕중학교 1개교는 비행장 소음이 심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대상 학교가 없도록 저희들이 학교 입지를 선정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또 극히 심한데는 방음벽 설치등 필요한 시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신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홍신희 위원 : 방음벽같은 것을 설치할 적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라든지 관계 기관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그 원인을 부담한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가 학교 주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면 철도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탄약차량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있다고 하면 국방부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해당기관에 출장을 가서 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지역출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

가까스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소음 공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현재 그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방음벽 설치한 학교로는 현재 4개교가 되겠습니다.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외천국민학교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 해 주었고, 또 영동에 이수국민학교는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줬고, 또 우리가 아울러서 개축시설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천농고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었고, 또 단양고등학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옥천에 모금국민학교는 도로공사에서 해줬지요 ?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

○ 관리국장 김근학 :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다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지금은 방음벽 설치할 학교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부의장 김광수 : 어저께 "충부시사" 잡지에 보니까 "원월생활관" 그곳에 대해서 상당히 혹독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낮에는 그 소음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겠고, 밤에는 무인지경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원월생활관에 지금 현재 운영 실태, 소음관계, 이런 것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원월생활관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아직 측정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기사가 벌써 난지가 오래됐는데, 그 기사가 쓴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사는 충주의 예성여고에서 나가서 있고, 기능직은 제천군에 속해 있고, 이래서 지역은 제천군이고 관리는 충주 예성여고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무엇인가 행정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곁들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잡지에 기사화가 되어서 문제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잘 검토좀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중부시사"라고 하셨던가요 ?

○ 부의장 김광수 : 예, 10월호에 나와 있어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그것을 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아까 홍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학교 소음관계에 있어서 비행기 소음관계, 지난번에 그 의정보고시에 충주·증원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심각한 얘기를 해 오셨는데 금가면에 대단히 큰 공군비행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팬텀기라든지 최신에 기종이 들어온 모양인데, 그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도무지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되고, 수업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안들리고, 아이들이 상당히 짜증스럽고, 심지어는 가축이 수태를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가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대충 지적해 보면 임정국민학교, 목계국민학교, 가금국민학교, 가흥국민학교, 수릉국민학교, 노은국민학교, 그 몇개 학교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계관을 파견하셔서, 교육감님 말씀처럼 하늘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떤 새로운 방음장치라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3515부대 공군부대하고 질충을 해서라도 이게 항구적인 일인 것이니까 학생들을 보호할 길이 없는가를 좀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주교육청하고, 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소음관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천에 명암분교가 있는데, 이곳에 증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암분교가 한 30명 밖에 없어서 교육청에서는 그 분교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몇번 시도를 해봤지만, 주민들 반대로 아직까지 폐지를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증부고속도로가 개봉

되면 이제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측에서 들리는 얘기가 차라리 방음벽을 쌓아줄 돈이면 학교를 자기네가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도로공사 측에서 인수하겠다는 매도할 수는 있는 것인지,

○ 관리국장 김근학 : 그 문제는 장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폐교학교 관리관계하고 관계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지방재정법을 교육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 그런 공사같은 데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가 되면 도로공사에도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혁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명세 : 예, 권혁풍 위원 질의 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음성여중에 철도소음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중창 설치를 완료하고, 나중에 교실 개축할 때에는 그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는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이수국민학교 할 때 보니까 그 직원들과 영동 관리과장이 수십번 올라가고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해서 가까스로 그것이 됐는데 아마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가 떨어졌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가 먼저 나 있는 데다가 학교를 뒤늦게 지었을 적에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기가 꽤 어렵죠?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옥천고등학교가 그런 하나의 유형이 아닌가 봐집니다.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지었는데 그 고속도로의 소음이 상당히 해요.

그러나 그것을 도로공사에 얘기 하기가 꽤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도 봐지는데, 거기에 혹시 말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거기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이미 나 있는 데다가 학교의 위치를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고등학교에는 이중창 시설을 다른 학교에 우선해서 먼저 해주고 해서, 아마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시내까지도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입지 선정을 할 적에 잘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옥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도 이중창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학교 뒷편에다가 나무를 심고, 또 이렇게 학교는 학교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도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점차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음림을 좀 심는 것이 어때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잎파리가 큰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소음

이 차단된다, 그러나 겨울에는 활엽수 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그런데 겨울에는 좀 덜해요.

겨울에는 창문을 꼭 꼭 닫고서 지내기 때문에 덜하단 말이죠.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소음 공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소음 공해 관계 보충 질문 없으시죠?

(위원석 침묵)

다음 계속하세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이어서 김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용 노후 책걸상 대체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대체 실적은 어떠한가, 그리고 학생 체위에 맞게 책걸상을 조정했는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학생용 노후 책걸상은 매년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는 연례 사업입니다.

그러나 특히 '89년 12월31 현재로는 책걸상 6만1,433조에 8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전량을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재원이 여의치 않아

서 대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조사된 노후 책결상 6만 3,965조 중 1만 620조는 1억 8,329만 3천원을 투자하고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노후 책결상을 대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하지 못한 물량 5만 3,300조는 '93년도에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전량 대체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체위에 맞게 책결상을 조정했는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내용 중에 새것은 새것대로 하다보니까 체위에 맞지 않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체위에 맞지 않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학생들과 척추 및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년초에 책결상을 재 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학년 중이라 하더라도 책결상이 체위에 맞지 않는 것은 바꿔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결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김응복 위원 :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전에 김사수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15% 밖에 안됐어요, 15%죠 아마.

계획에 다른 실적은 좋은데 책결상 배치

만은 아주 부진한 것인데, 그 원인을 좀 알려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학교가 폐교되는 곳도 많고, 책결상을 일률적으로 대체하다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쓸만한 책상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쓸만한 책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마 대개 학교 창고에 책결상을 쌓아놓는 채 보관돼 있고, 심지어 강당같은데 이런 데 까지도 쌓여있는데, 그런 것도 쓸만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새것으로 대체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

폐지된 학교의 책결상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우선 요즘 지적한 대로 다른 실적은 다 80%, 85% 이상인데 그것만 부진한 이유가 혹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지, 불연이면 신설 학교에 배치하려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봤어요.

○ 관리국장 김근혁 : 추가로 답변 말씀드릴까요 ?

○ 김응복 위원 : 예.

○ 관리국장 김근혁 : 그 실적이 15%로 부진한 것은 제1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 때에 아마 실적보고 할 때는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지된 학교 책결상 활용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책상 1조가 만 8천원 내

지 2만원이라는 현찰로 보고 각 교육청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그것을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응복 위원 :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도교육청에서 일선에 출장하실 때, 이런 것을 뗏하지만 한번씩 둘러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때는 교육부에서 관심이 있어서 교육부 감사대상이 됐었어요.

아이들 체위가 요즘에 체격균형이 가방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전부가 자세가 기형이 많아요.

그런데 문교부의 감사대상 일때에 처분된 사례가 있어서 직접 가서보니까 그냥 뛰 아이들이 커서 책상에 무릎을 못 들여 놓고 옆으로 앉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책걸상 새것을 갖다가 놔서, 다 새것인데 하나, 둘 크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천상 현 것을 놓아야 하는데, 그래도 미관상 흉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 새것으로 배치해 놓는다. 이거예요.

이래서 적어도 교육부까지도 관심사라면 우리가 생각해도 크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한번 일선학교 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서 하여간

초·중·고가 됐던간에, 한번 교실을 순회해 보면 대번 파악될 거예요.

부탁합니다.

○ 권리국장 김근학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응복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셨던, 잡부금 일체 근절과 육성회비 활성화 시책에 따른 예산 문제점과 본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잡부금 일체 근절과 육성회비 활성화 시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창조금품 접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육성회비 현실화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학교 창조금 부족으로 체육단체경기 종목 육성에 어려움이 또 예상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절감액을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선에 절감액을 풀어서 지원하도록 해서 국민학교에 9월18일날 8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육성회비 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성회비 인상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부담도 적고, 또 학교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여러 측면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교육위원님께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성회비가 인상함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는 육성회비 감면자 수를 또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잡부금 일체 근절과 육성회비 활성화 시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응복 위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홀딩중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가용재원이 어떻게 많이 있어요?

보류했다가 예산배정 하게 될 것을 적어도 이것이 연초부터 예상된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홀딩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 관리국장 김근혁 : 예, 이 문제는요 그 운영비라든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 절감책의 일환으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교육부에서 찬조금, 잡부금 근절과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홀딩된 절감액을 필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학교 추계 운동회 때, 교육청 당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5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는 것인지, 또는 그 말씀이 아닌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관리국장 김근혁 : 추계 운동회 때 50만원씩 지원 한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한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8억원을 지원한 것은 학교 평균을 해보면 25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찬조금이 잡부금 징수 근절과 관련해서 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잡부금 내지 찬조금을 일체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각 일선학교에서는 이번에 운동회를 하면서 찬조금을 안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당초 예산에 있던, 그 50만원인가 48만원만은 학교에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 작은 학교는 몇 학급 안되는 데는 그것 가지고

운동회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학교에는 이것은 도저히 부족액이 아닌가,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마는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러한 예산은 큰 학교에는 큰학교 대로 더 좀 줘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저희들이 그 추가로 지원한 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한 250만원 되는 것이고, 큰 학교는 한 3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그 돈 가지고서 운동회도 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운동회 뿐만 아니고 찬조금이나 잡부금을 징수 못하게 하는데 따른 재정상 학교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9월에.....

○ 관리국장 김근학 : 9월18일날 나갔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9월18일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그러면 아마 운동회는 이미 끝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운동회는 추석 다음날, 또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더 일찍 줬을것 같으면 운동회를 잘 했을텐데, 끝난 다음에 줬기 때문에 그 운동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으리라고 봐지겠네요?

○ 관리국장 김근학 :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회 경비 50만원 이외에 학교 운영비에서 꼭 필요하면 지원하고서 추가로 받은 것 가지고 보충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마 그것으로 보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학교에서 더러 불평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운동회를 할 것 같으면 찬조금이 큰 학교에는 상당히 들어오고, 뭐 5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이상까지도 들어오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고, 여기서 주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동회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감소하다고 하기는 뭣하고 참 보잘것 없이 운동회를 치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일찍이 줬더라면는 보다 더 활발한 운동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이상일 위원 : 그 잡부금 징수를 이제 금지를 시키면 국민학교 체육대회는 이제 다 넘어간 것인데, 각 학교가 키우고 있는 체육부, 학교별로 지정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체전 대비도 있고, 그 체육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경비가 1년에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을 실비로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안그러면 학부모 찬조금도 끊어지고, 잡부금도 걷지 말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내 큰 학교들은 아마 운동회 때 한 1,500만원씩 걷는 학교가 있나봐요.

그래서 한 200-300백만원은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농구부를 하나 키우는데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또 순회 코치를 교육청에서 주는 경비가 30만원인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코치비가 안되니까 해당 학교에서도 아마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가 본데 그런 경비가 딱 막혔을 때, 내년 소년체전 같은데 과연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93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체육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학교의 체육선수 양생 문제는 찬조금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

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문제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은 전면적으로 징수가 금지된 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인 찬조금에 대해서는 각급 교육청에서 접수를 해서 지정된 목적에 또 지정된 학교에, 이렇게 사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안이 나오면 찬조금, 잡부금 근절과 관련된 일련의 대책으로 교육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찬조금 보충질문.....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 질문하세요.

○ 이재희 위원 : 전 국장님 보다는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계 운동회에 저는 제천 관내의 거의 절반 학교를 순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찬조금을 접수 안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왕미국민학교에서는 어느 학부모가 맥주를 한박스 들고 와서,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본부석으로 가져 왔는데, 그 학교장이 "일체 접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만 번씩 들고 본부석 뒤에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갔다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부형하고는 잡부금이나 찬조금은 평생을 두고 얘기를 못할 것이 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하나도 안받으면서 며칠뒤에 소방서 연합체육대회가 열렸었는데, 이것은 각 면 의용소방대도 다 나오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 교장들도 의용소방대에 3만원 4만원씩 다 찬조하고, 일률적으로 체육대회에 다 나갔다 이거예요.

이 기관에서 오는 찬조금은 받아도 좋겠는데, 이것을 일절 금지해 놓아서 불평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학분교를 마침 갔는데, 해당 경찰서장이 거기에 위문을 와서는 학생들 공책을 다 가져오고, 경찰서장이 그 2만9,000원을 내서 막걸리 음료수 사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다 돌리고, 끝머리에 그 분교장한테 흔지를 놓고 "아! 경찰서장 것은 괜찮습니다, 소주 한병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차단하는 것 보다 좀 받을 것은 받도록, 아니 교육위원이 갖다 낸 것이 어떤데는 교육청으로 접수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돈이나 많이 넣었으면 남부끄럽지도 않은데 교육위원이 돈 3만원 낸 것을 교육

청 관리과에 접수시켜 봤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장 회의 할 때, 약간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접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부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의정 김영세 : 예,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구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의 답변중에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답변은 다음날 하시죠?

(부교육감 집행석에서)

○ 부교육감 빅동기 : 예.

○ 의정 김영세 :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은 다음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저는 잡부금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교육감 집행석에서)

○ 부교육감 빅동기 : 예, 알겠습니다.

○ 의정 김영세 :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찬조금 문제 더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이어서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이후 교육청 발주 공사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공사 내역과 관련해서 49개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2-3개업체내지 4-5개 업체가 발주공사에 참여한 사유와, 또 명성·삼풍·신흥의 낙찰을

이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9개 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자 응찰하는 업체가 2-3개, 4-5개 되는 것은, 49개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등록업체는 많습니 다. 이는 공사 규모라든지 도급 한도액에 따라서 2-3개 내지 4-5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삼풍·신흥, 그 세개 건설 업체중 여기서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신흥건설에서 시공한 중앙도서관에는 누수가 되는, 하자가 있어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는 명성에서 낙찰이 됐는데 그 당시 1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5개 업체만 응찰을 한 사유는 뭐냐,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현재 입찰제도가 현장설명에는 업자들이 직접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1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입찰현장에 참가해 보니까 공사 규모가 작거나 또는 크거나, 도급 한도액이 넘어서 입찰 현장에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응찰자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회사 용역시 흑시 플러스 알

파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맡길 적에는 조달청 기준단가인 설계 용역 요율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의혹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현행 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정가격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설계금액을 현장 설명시 공개하고 또 이것을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입찰 직전에 각각 다른 예정가격 3부를 작성해서 입찰 현장에서 개찰 직전에 응찰자 중 1인을 지정해서 1부를 선정토록 하고, 직접 공사비를 입찰 현장에서 산출토록 하여, 공사 입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 또 아울러 응찰 금액이 현저하게 높게 써냈거나, 낮게 써낸 사람은 특정 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규정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개선방안대로 현재 입찰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시겠습니까 ?

○ 권혁풍 위원 :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하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3항까지의 답변만 하고, 4항 답변부터는 이다음 28일날 계속해 주시고.....

○ 부의장 김광수 : 질문은 다음에 하십시오, 3항까지 보충질문을 다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 10분동안에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3항까지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4항부터의 답변은 관리국장님이 이다음 28일날 계속해 주십시오.

3항까지의 보충질문 하십시오.

○ 권혁풍 위원 : 제가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등록업체 수는 많은데 어떻게 돼서 응찰업체 수가 많이 줄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는 중에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파는 아니지만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어제서 그렇게 줄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혹시 담합의 가능성은 없었던가, 담합에 사례는 없었던가, 하는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개선방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

기에 또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 입찰참가 심사제도라고 해서 발주관청이 응찰자를 놓고서 과거의 도급한도액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혹은 시공능력이라든가, 과거에 성실시공 여부, 이런 것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또 최저낙찰자에 의한 덤핑입찰 방지, 여기에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신가, 하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관리국장 김근혁 : 권혁풍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합사태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주지를 해서 담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방안 나오지 않았나, 개선방안이 나왔어도 입찰제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일소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

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사전 입찰심사제 관계는, 이 관계는 입찰관계를 총괄하는 재무부나 또 건설관계를 담당하는 건설부에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입찰 심사제는 이런 소규모 공사가 아니라 대규모 공사시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급한도액이라든지 경영실태가 양호한가, 또 시공실적은 좋은가, 또 성실시공을 했는가, 하는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무부에서 현재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셨던 최저 입찰제에 의한 덤핑을 방지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저희들 차원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도 재무부에서 아울러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래서 어떠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얘기가 되기가 쉬워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앞으로 주시를 하면서, 이런 담합의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예의롭게 주시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남은 사항에 대한 답변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9명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별첨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2년 9월 28일 (월요일) 14시 00분

의 사 일 정(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기타 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 2. 기타 안건 처리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1분)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도 제2차 본회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

입니다.

26일날 답변시에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서는 현행 사학재정 지원의 근본 취지와 지원방법과 지원에 따른 문제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학재정 지원의 근본 취지는 사립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학에 대한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방법은 기준재정 소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나머지를 보조 소요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소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점은 학교법인이 영세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보조 금액이 매년 교육비에산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영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공립화 등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현행 사학재정 지원의 근본취지, 지원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찬조금 접수창구 접수현황과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9월 23일 현재, 찬조금 품 접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금은 7개 교육청에 인원은 31명으로서, 664만원이 되었고, 물품은 8개 교육청에 25명으로서 571만9천원해서, 9월 23일 현재 찬조금품으로 접수된 현황이 56명에 1,235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품 접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접수창구 이용 전보다 찬조금 접수에 현저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 거주자가 교육청 창구를 이용 할 때 여러가지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찬조금품 접수의 기피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찬조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할구역 구분없이 도내 지역교육청에 접수를 가능토록 각급 교육청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또 권혁풍위원님 말씀중에 이동창구 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동창구 개설은 찬조 희망자 및 시기를 예상 할 수가 없고, 또 교육청에서 이동창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찬조금을 유도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창구 접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해도 될까요?

○ 의장 김영세 : 가만있어요, 우선 질의자인 권혁풍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 권혁풍 위원 : 문제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씀이고, 또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 그 것은 주민들의 호의를 제대로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이동창구가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먼저 이재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 한박스를 그자리에서 내동댕이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있었다 할 때,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로 입니다만 어떤 호의적인 호의가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기본예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호의를 유도한다든가, 다른걸 빙자해서 미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쁘게 쓰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순수한 호의가 들어 올때 이것을 받는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동창구가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동창구가 혹시 또 지금 말씀에 "어떤 유도하는 형식이 아니냐, 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좋은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장이 용단을 내려서 박카스라든가, 혹은 맥주 박스라든가, 뭐 이 정도는 좀 받아줄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교장들은 절대 이것을 거절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이것은 어떤 책임 추궁을 받을 소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인사 문제까지도 대두된다, 그래서 겁을 엄청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정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교육위원 차원에서도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그러한 좋은, 순수한

호의는 받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어렵다 하게 되면 처음부터 교육청 직원을 출장 보내지 말고, 주민의 대표, 혹은 육성회장이라든가, 주민의 대표들이 "이동장구를 좀 필요로 하니까 출장을 보내주세요." 하는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이동장구를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보완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실현이 되어서 참 훌륭한 제도정착이 됐으면 어떨까, 제가 말이 조금 많아지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한군데 해보겠습니다.

몇일 전에 음성군 감곡면에 오갑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노민우 교장이신데, 이 운동회 날짜를 잡을 때 보통 음력 16일날은 피하는게 사실입니다.

이 학교도 역시 그 날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의 대부분이 그 근처 공장에 직공들인데, "16일날은 피했지만 다음으로 일요일날을 택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거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축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요구가 들어와서 이 요구를 교사들에게 직원회에 회부를 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러면 좋

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나와서라도 운동회가 주민 축제가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개최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짤때도 그 가족들 게임을 많이 넣고, 혹은 주민대표와 직원들간의 배구게임도 넣고, 또 청년들의 축구시합도 넣고, 더구나 또 노인들을 한 백여명 초청을 해서 교장이 자기가 쌀을 내가지고서 노인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이 한 4백여명이 참가를 했어요, 학생은 한 2백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배가 넘는 한 4백여명이 왔답니다.

그래서 일대 축제가 되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좋아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더구나 어느 학교는 그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 등교거부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참 훌륭하시다." 그러가지고 아주 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졸업생중에 한 분이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급식시설까지도 맡겼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같은 일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일도 주민들과 이렇게 협조가 되면 멋진 축제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예를 듣고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고

서, 이럴 때 이런 이동창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연구를 계속해 보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 의장 김영세 : 가만있어요, 그 보충 질문에 지금 답변하세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동창구 접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도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창구가 개설돼서 창조금을 내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창조금에 대해서는 가서 받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재희위원 질문있습니까?

○ 이재희 위원 : 예, 이 창조금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요즘 상부의 지시사항이 이처럼 철저하게 이행되는 걸 처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추진은 됐는데, 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위반하면 해임까지도 된다' 하는 이러한 위압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나 어떤 징계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벌이 될텐데 확실히 본청에서 이 회의시에 사유 경증을 막론하고 해임한다는 이런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창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에서 '92년 8월 중순에 전국 시·도 교육청 행정과장, 감사담당관, 또 장학과장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광복 이래 교육계에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 시·도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시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여론으로 보면 86%가 이 창조금품이나 잡부금 정수를 폐지한다는 데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회의서류를 저희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인쇄를 해서 각급 학교에 이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 이재희 위원 :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 아까 사학지원 문제를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몇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달에 사학재단이 각급 학교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가 물어 봤는데, 거의 보조해 주는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학재단이 학교에 도와 줄 돈이 없으면 앞으로 사학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질문했을 때 "계속 감사라도 해서 지원금이 좀 늘어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후에 알아 봤더니 거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시내 사학유지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립학교가 평균 수업시수가 17시간정도인데, 사학이 20시간에서부터 22시간까지 평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배정이 되는데, 수업시수 많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손해, 또 학교시설이 공립에 비해서 현저히 낡고 처져있습니다.

과학실이라고 가보았더니 어느 학교라고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대단히 빈약한 그런걸 봤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둘건지, 지난 번에 교육부에서 '93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사학지원비를 대폭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도에서는 내년도 사학에 시설하고 교사증원 배치 같은 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몇 년이나 가면 시설면에서 사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의 시설이 갈아 지려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관리국장 김근학 :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문제는 그 여러 위원님께서 회기중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립학교가 39개교인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20여개 사학법인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사학재단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영세한 사유는 옛날에 중학교가 의무 평준화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만 갖추어지면 중학교를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한 재단에 대해서도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임야나 전답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무슨 상가라든지, 예식장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다소 발생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매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로 말미암아서 국고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대 사립의 교원 평균시수 비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립은 17시간 내외가 되고 사립은 21시간 내외가 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 사립학교에 1명씩 증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약간 시정이 됐고, 또 공립에 시수가 적은데는 심지어 10시간정도 하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립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원들을 이렇게 증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2-3년전에 상당히 사회문제화 됐던 국립 사범대학생들의 적체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파행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국장 회의나 다른 회의에서도 공립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정원은 우리 예산운영면에서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공립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사립에 대해서는 증원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년도별 지원관계는 '92년도에 159억원정도를 사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07억원정도를 해서 금년도보다 30%이상 증액된 액수를 사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의장 김영세 : 예, 또 이 문제 다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

고, 그리고 소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초과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액이 아까 이상일위원회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입금 전혀 없다, 이렇다면 그 당초 설립목적에 어떤 그 특수 근학 이념이 있을텐데, 그 근학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뽑아가시고 학생들이 물론 전제가 되는 거니까 "학생들을 평준화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보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논리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기본 재산이 있어서 수입을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승인이란건데, 거기서 그 소요액이 전혀 없을 때는 전부 다 100%를 지원하는 것이냐, 여기에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 즉 자구책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전부 국가에다가 의지하면 공립학교와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설이나 무슨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의 것이겠지만 운영비도 어느정도 지원되는 전입금이 있어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어떤가 한번 또 제안을 해 봅니다.

전입금에 링크(Link)해서, 보조금을 지원할때 전입금이 많은 학교는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천프로를 지원한다든가, 즉 백만원 전입금이 들어갔을 때는 천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전입금 하고 보조금하고 링크를 시키는 방

법, 그러면 전입금이 좀 유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좀 좋은 방법을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수익이 없는 사업을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공립화 하실 계획까지도 세우신 것 같은데,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셔서 뚜렷한 원칙이 있어서 원칙대로 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더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덜 준다든가 이러한 불평도 있으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 서면 자기들이 전입금을 더 좀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 보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중학교가 더 영세한 편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평준화 계획에 의해서 중학교를 세우도록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사학에서 학교를 설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것을 좀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전입금하고 링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학교가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공립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간에 교육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불균등하게 받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보충질문 해야겠네요.

원래 사립학교를 인가할 당시는 충분한 학교운영에 대한 수익재산을 정부가 감안해서 인가를 했어야 옳은데, 요는 그 당시 정부가 공립학교로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실만 지으면 인가를 해주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인가 받은 학교들이 요는 기본재산이 없어서 오늘날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래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로 봤을 적에는 사립학교가 무시험 배정에 의한 배정 형식의 인원이 아니라, 그 사립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됐든지간에, 수업료는 얼마를 받든지간에 그 학교 설립목적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국고를 보조해야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가든 안가든, 상관이 없는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담세자로서의 자녀중 사립에 간 사람에게 불

이익이 오기 때문에 국고보조의 당연한 귀결이 오는데, 나는 권혁풍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소위 수익재산에 진출금의 여유가 있을 적에는 이것은 철저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진출해야 됩니다, 진출 안하고서는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학법인이 수익재산에서 수익이 생겨가지고 진출할 것을 안하면, 그것은 그 법인의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할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요는 그 재단이 얼마만큼 더 수익을 올려서 실제 학교에다 진출해주냐 하는 것은 의욕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의욕이, 오늘날 사학법인들의 의욕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사학법인에서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학교에다 진출을 하면 진출한 것만큼은 국고보조액에서 삭감을 하고 줘요,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진출할 의욕을 안갖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진출 해준 것을 국고보조와 무관하게, 연결만 안지으면, 그렇게 해야 법인이 다만 한푼이라도 의욕을 갖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국고지원을 해주었으면 그것을 보상금 형태로 해서 정산을 해야지, 이제까지 형태는 법인에서 진출을 해주

면 진출한 것 만큼 국고보조액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도로 환수를 받아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학경영자들의 의욕을 약화시킨 것에 하나다, 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그 중학교 평준화라는 것이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학교 선택권, 또 교장선생님한테 있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주어지고, 또 학생선발권을 교장에게 주어진다면 구태여 사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평준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간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부득이 그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데는 사학에 대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사립간의 균형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학에 준 보조금은 정산하기 때문에 일부 사학

에서는 그것을 절약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사학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관리국장 김근학 : 이어서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88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의 교육청 발주공사중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공사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88년와 '92년도 시설사업중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88년도에서 '90년까지 우리 본청 발주공사중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공사 실적은 18건 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용 별로 보면 누수가 12건, 천정 및 바닥 교체 4건, 설비 2건 이었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를 전부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88년도와 '89년 시설사업중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상고 교실 증축분하고, 중앙

도서관 신축공사건인데, 이것도 누수 건입
니다.

제천상고는 11평방미터가 누수가 되었고,
중앙도서관 약 3백평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1,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
료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
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응복위원 말씀하세요.

○ 김응복 위원 : 일선학교의 공사중에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애기되는데 공사 관
계는 역시 가령 누수라든가, 또 혹은 균열
이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공사
내실면에서 견고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말하자면 하자보수공사 안하고 애초 공사
가 제대로 됐을 때와 그 다음에 하자가 생
겨서 나중에 하자보수 공사를 추가로 했을
때에 그 공사자체의 견고성이라고 할까, 이
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거예요, 확
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옥상같은데, 이런데 누수공사를 보면
몇번 하고 이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자
공사 해서 위에 그냥 시멘트같은 것을 덧씌
워가지고 누수방지 했다고 하더라도 몇해되
면 이게 떠요,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으로 봐서 하자공사는 되도
록 없어야 하겠고, 없게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사자체 감독, 그 자체를 철저히 해야 할
줄 아는데,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몰라서 묻는 건데, 하자공사 보수했을 때와
애초부터 공사가 제대로 됐을 때에 견고성,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그 세부적인 기술
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 실력으
로 봐서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개 이 일선학교 공사가 부실한 원인은
뭐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산 교실단가가 현실성
있게 책정이 됩니다마는, 아마 과거 몇년전
에는 그냥 물량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
산은 충분히 지원은 못하고 물량만 확보하
도록, 이렇게 독려했기 때문에 다소 부실한
감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렇고 또
이 균열이라든지, 누수되는 현상은 교실을
일시에 예산 형편 때문에 완성은 못하고 금
년도에 두칸, 작년도에 두칸, 내년도에 두
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음매 같은 곳이
아무래도 강도나 이런데에서 차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균열도 생기고, 누수가 되는
,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러면, A라는 학교를

청주시에 하나 짓는다고 하면 일시에 학교 전체를 건설을 하면 누수나 이런 균일 관계, 이런 것이 최대한 방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금년도에 열칸 짓고, 내년도에 또 열칸 짓고, 그러면 이어서 짓게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까마는 또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하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해서, 18건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공사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쓰는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그 다음 진행하시지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권혁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된 학교재산 관리의 개선방안은 그간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됐는지,

아니면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확고한 현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리상에는 화재나, 파손, 불건전한 장소로 이용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탈선할 우려가 있다, 하시는 것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9월 1일 현재 본도내에 폐교된 학교수는 4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생야영장, 교직원 휴양소 등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학교가 8개교이고, 교원대학교 등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학교는 14개가 돼서 현재 저희들이 임대 또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22교가 활용되고 있고, 6개교도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또는 활용예정 학교를 제외하고 현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학교는 16개교입니다.

이 16개교에 대한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향락이나 소비성 목적을 제외한 건전한 목적이나 공목적에 한하여는 임대를 허가 하도록 각 지역교육청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공익단체나 학교법인 등에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화재나, 파손,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폐지된 학교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을 상주시킨다든지, 또는 기능직이 거기서 살림을 하면서 본교에 출·퇴근하도록 해서 야간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예산, 당직비라든지, 또 공공요금 등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 장충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할 것 같으면 매도 한 것은 한 건도 없군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매도는 없습니다.

○ 장충호 위원 : 지금 말씀중에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대응 시기는 어느 때쯤 가면 개정이 되겠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 교육부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지방채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무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마 금년중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충호 위원 : 이젠 제 개인의 생각인데 이제 우리 교육도 자치교육이라는 이름을 띄고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 단양같은 데 말하자면 산수가 아름답고 한 곳에 폐교되는 학교가 몇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 "충청북도 교사의 집" 이라고 할까,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그 산동성변에 해수욕장이 들었는데, 거기서 "산동성 교사의 집"이라 해가지고서 큰 호텔같이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우리 고장에 좋은 경치가 있고 한데는 우리 충북교사들의 연수도 하고, 휴식도 시킬겸, 이런 것을 우리도 자체로 하나 할 수 없는가, 그걸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직원 휴양소 문제는 제가 여기 관리국장으로 오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있는 방고개라든지, 두함분교 폐교된 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류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폐지된 학교에 시설을 아무리 개수를 해봐도 현 시

설이고, 또 현재 그 개인들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 저기에 아주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이 일반 숙박시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 내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다마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의욕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3억원인가를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웬만치 그 숙박시설이나 내놓아도 우리나라는 아직 습관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동료직원들이 가는 데에는 여간해서 잘들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대중속에 묻혀가지고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같은 동료들끼리 가고 그러는 건 기피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다가 못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언젠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교육청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서 교직원들이 휴가철이나 이런 때는 가서 이용을 해서 심신을 쉬고, 단련을 시키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중호 위원 :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

습니다만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꼭 실현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 아까 지나갔던 사학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쭙 봐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권혁풍 위원 : 관리국장님이 지금 내려 가실까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보충질문에 지금 사학에 보 조금을 줄때, 그 전입금, 즉 재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그것을 공제한다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어떤 사학에서 전입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입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종의 링크를 시키는 건데, 그런식으로 링크를 시킨다면 오히려 그 전입금이 들어오는걸 막는 저해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적게 내는 데는 적게 지원하는, 이러한 즉 적극적인 링크제도 이런 것을 쓴다면 오히려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째서 아무리 못해도 운영비에 얼마큼은 들을텐데, 겨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걸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전입금 몇 백만원가지고 무슨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며, 무슨 재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개인재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뭔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걸 단호하게 고쳐버릴 필요가 없는지, 그건 뭐 보조금 정산제 폐지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사학에 대한 전입금 관계는 전입금과 링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학에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과 링크해서 대학의 정원을 증원할 때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때도 전입금의 과다에 따라서 국고지원금으로 실험실습비만 운영비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때 국가에서 기본시설만 갖추면 설립을 적극 권장했던 사항이라 그렇고, 또 평준화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링크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권혁풍위원님 말씀대로 사학의 전입금이 많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링크해서 국고보조도 이루어 지도록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 당국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원칙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사학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사학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 당국하고도 협의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전부 다 관리국장 소관 답변 하셨죠?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첫번째,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내 잡부금이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수업료, 육성회비의외의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환경미화용품, 급식용품, 청소용품 구입비 및 수익자 부담금, 학교 장려금품 등을 징수하는 일체의 모든 경비를 잡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잡부금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며는 첫번째, 환경미화용품 구입비로써는 화분, 커텐, 책상 구입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급식용품 구입비로는 주전자, 쟁반, 컵, 커피포트 등 구입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청소용품 구입비는 쓰레기통, 비, 걸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금품은 보이·걸스카우트, 아람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비, 어린이 신문 구입비,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수학여행경비, 졸업생 앨범비, 우유급식비 등이 수익자 부담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장려금품으로써는 위문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5항은 교육감이 학교에서 관리를 허용하는 특정경비 이용으로써

그 세부사항은 현재 행정과에서 경비범위를 결정하여 9월 23일 지침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 김광수위원입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그럼 앞으로 이것을 징수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환경관계, 급식관계, 청소관계 이런 것은 이런 잡부금은 일체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금은 본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급식비는 본인에게 직접 급식을 하는 비용은 허용되고, 급식을 위해서 주전자나, 쟁반, 커피, 커피포트 등을 구입하는 일은 허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허용되는 비용은 좁전에 말씀드린 보이·걸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 적십자회비, 폐품수집, 또 직접 본인이 급식을 받는 급식비, 위문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산학협동 차원의 기업체 지원금, 어린이신문 구독대, 수학여행비, 졸업생 앨범비, 전염병 예방접종비, 건강검사비, 학생야영장 경비, 현장견

학비,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비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 것은 징수할 수가 앞으로도 있다 이런 애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그런 내용을 9월 23일 전부 해당 교육청에 지시가 되서 각 학교별로 전부 이런 것은 받아도 좋고, 뭐는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다 지시가 됐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지침이 나갔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지침이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 부의장 김광수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학여행비하고 앨범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마는 학교별로 차등이 있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수학여행비를 받을 적마다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주로 2박3일간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서 본인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명목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교통비, 버스비는 얼마, 잠자는 숙박비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이고 제대로 안돼가지고서 말썽이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앨범대도 그와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 앨범을 만드는 사진관하고 그 학교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받는다는가, 이런 사례도 어느 지방에는 일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엇인가를 잘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지금 말씀하신 학생 앨범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한 바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여행비는 다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철저히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상태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아까 관리국장님 답변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 잡부금을 받는데 다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때 운동회 할적에 본인들이 순수하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은

누가 권장한 것도 아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부모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잡부금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학교의 잡부금은 완전히 근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답변하실 것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또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의 잡무부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무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의 지도, 특별활동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교 학급관리, 기타 위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교원잡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보고문서의 필요성, 적절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고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보고 문서를 제외한 모

든 보고요구 문서는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의 통제를 받은 후 시행하고, 보고요구 문서를 생산할 때는 보고문서의 타당성여부, 문서의 중복성여부, 기존자료의 활용가능성여부, 표본조사의 가능성여부, 보고기일 또는 주기 타당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요구 문서를 통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고기일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문제점으로는 교육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보고지시 협조공문이 과다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상반기 총 1,201건이 접수가 됐고, 발송 다시 말해서 보고한 문서는 31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 협조 요청시에 학교장의 처신이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표본조사를 한 결과, 교당 교원이 동원된 것이 2회에 18명, 학생이 13회에 1,105명이 동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교육행정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의 철저 이행, 기존통제자료의 적극 활용, 회보제의 적정 활용, 현재까지는 1분기에 4회정도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회해서 회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전담 직원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학교에 7학급 이상 사무직이 배치된 학교수는 144개교입니다.

그중에서 7학급 이상이 141개교이고, 6학급이 3개교입니다.

미배치 학교수는 6학급 이하가 168개교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권혁풍 위원 : 보고문서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서, 정기보고 같은 것은 아마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수시보고 하는 것, 지금 답변도 계셨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공문,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개선방안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제일 나중 말씀하신 그 "사무전담 직원을 배치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6학급 이하가 문제입니다.

지금 168개교가 아직 사무직원을 배치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큰 학교는 아무리 보고 문서가 많아도 직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배당 돌아가는 그 숫자가 적습니다, 관장사

무가.

그런데 이 6학급 이하, 제가 관내의 소규모 학교를 몇 학교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고충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숫자가 몇명 안되나 보고하는 것은 큰 학교와 똑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한교사가 맡은 그 사무관장이 어마 어마하게 많아서, 여기다 시간을 더 쓰고 머리를 여기다 더 써야지, 학생지도는 오히려 머리를 덜쓰고, 판심을 덜 갖는 그런 현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학교에 배치될 일반직 사무담당 직원을 오히려 이 작은 학교에다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작다고 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은 똑같은데 사람은 적게 주고.

여기에서 나중에 제가 인력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것 이지요.

그러면 작은 학교는 보고문서를 적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준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가 이 소규모 학교, 6학급 이하짜리 168개교, 여기다가 우선 일반직을 먼저 배치를 시켜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그 문제는 좀 더 정책적인 차원이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국을 통털어 볼때에 소규모 학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차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그 교육자치를 하게 되면, 그런건도 차원에서 좀 교육부 눈치 안보고도 할 수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물론 일괄해서 다 해결할 것은 안되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더 뽑자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큰 학교에 배치 할 것을 좀 줄여서 작은 학교로 먼저 보내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예.

○ 의장 김영세 : 다음 계속하세요.

(김광수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 부의장님.

○ 부의장 김광수 : 잡무판계하고 그 속직판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히 국민학교의 선생님들 속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지금 현재 국민학교만은 속직전담제로 되어서 속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국민학교는 속직을 안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속직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예,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도 그 개선책이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소규모 학교도 지금은 국민학교는 속직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시 교원 잡무부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다음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교육발전 계획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기 교육발전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고, 충북교육 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계획 수립의 지표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계획 수립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자주, 창조, 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며, 그 밑에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갖춘 도덕적인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사람, 세계시민 자질과 미래 투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에 목표를 두고, 수립의 방향으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발전 계획, 미래지향적으로 교육내용을 돕고, 방법을 찾아 혁신하는 계획, 가정, 학교,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 계획 수립 과정의 연역적 체계를 중시하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교육 방향, 국가의 교육지표와 충북의 교육지표등 광범위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한 토대 위에 수립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방향만 제시된 상태이고, 또 이 방향에 의해서, 기본목표에 의해서, 각과에서 여기에 따른 원고를 지금 현재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11월달 정도는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되고, 원고가 수집이 되면 집필위원회 검토와 집필을 통해서 윤곽이 잡히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한 보고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발전계획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검토될 사항이 있다면 교육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 권혁풍 위원 : 21세기를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좋은 말씀, 참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에 교육의 여러가지 부조리를 탈피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계에 아주 통폐라고 느껴지는 입시위주 교육같은 것도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꿈을 갖고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일전 그 보도에 기초위원들, 장기발전 계획 위원들이 인선이 완료가 돼서 발표가 된 것을 보고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최고도의 교육전문가가 동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는 원대한, 참 백년대계의, 교육의 틀을 잡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인선한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장학실무진이 기초를 닦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 교육의 골격이고, 그렇게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중요한 장기 교육계획을 갖다가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교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육대학이라든가, 교원대학이라든가,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좀 더 미래학적인 진단을 거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이것을 기초를 닦아야만이 우리 주민이 보다 광범한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너무도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안일한 착상에서 이런 것이 되는게 아닌가, 중대한 문제를 너무 좀 안일한 감을 느끼면서, 좀 더 최고도의 전문가를 동원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집필위원은 여덟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저희들의 취지는 그래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에 직접, 일선 현장에서의 본인들의 경험과 실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현지에 투입을 해서 그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차적으로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권혁풍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문가인 대학교 교수에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모든 계획을 작성하고 성안한 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을 거친 후 최종 마무리를 질까,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내가 한번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

니다.

지금 담당관계서는 교육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지방교육자치법에 지금 제일 핵심이 빠져 있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에 이 교육자치 본래의 성격이 주민에 의사를 교육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교육정책에 교육위원회가 심의할 권한이 누락돼 있어요.

그럼 그 규정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보고로 그치는 것인지, 또 그 규정에 누락돼 있어서 보고로 그친다 하더라도, 이 장기계획을 하는 데는 거기에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건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을 거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윗분하고 상의를 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다음에 결정적인 직위에서 답변해 주시는 데요, 분명히

교육자치 규정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 본래의 성격에서는 주민의 교육의사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옳은 것이고, 또 그 장학계획이나 이런 것 이외에도 여기 재정적인 수요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의당 성격상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보고로 그쳐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 의장 김영세 : 미리 알려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권위원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지금 의장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건 뭐 법 조문에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3조를 보면, 3조 1항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장기발전 교육계획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으며, 또 13조 9항에 보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 13조 교육위원회 권한에 보면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그 법령에 의해서, 3조 1항에 의해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피하신다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는가, 당연한 우리 교육의 의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절차상 그런 하자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더 책임있는 분이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문하시지요.

○ 박병해 위원 : 지금 의장님과 권혁풍 위원, 두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전번에 모 기관에서 '96년도까지 도내 장기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사방 군마다 다니면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도 보면 예산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6년이 끝나면 그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장

기계획은 몇 해나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교육의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건설의 장기계획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안에서도 몇 단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틀림없이 재정하고 전망은 꼭 집어 넣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하세요.

(위원석 침묵)

그러면 이 장기교육 발전계획안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다음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 상반기 산하기관 감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40개 기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24개 기관을 마쳤습

니다.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감사에 대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9건에 17명, 행정상 조치가 80건에 267명, 재정상 조치가 22건에 천 480만 7천원, 합계 111건에 284명, 금액으로서는 1,4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가 22건에 80명,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32건에 76명, 624만 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시설공사는 5건에 10명, 47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물품관리는 3건에 3명, 급여관리는 12건에 26명, 681만 3천원을 회수했습니다.

기타 37건에 89명, 127만 6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총 13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6건에 12명, 행정상 조치가 46건에 152명, 재정상 조치가 2건에 182만 9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합계를 말씀드리면 54건에 164명, 182만 9천원을 회수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

무가 32건에 105명, 회계업무가 3건에 3명, 기타가 19건에 56명, 18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종합감사 및 기강감사에 따른 총계를 말씀드리면, 신분상 조치가 15건에 29명, 행정상 조치가 126건에 419명, 재정상 조치가 24건에 1,663만 6천원을 회수했습니다.

합계는 165건에 448명, 이래서 회수한 금액은 1,6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보충질의 하시지요?

○ 권혁풍 위원 : 제대로 다 적지는 못했는데, 학사관계가 22건이나 되는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 권혁풍 위원 : 예산관계가 32건되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들이 먼저 신문 보도를 거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좀 알고서 신문보도 되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회의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시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분석한 결과 그 뒤에 보도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는 어떻게 보도준칙이 그렇게 안돼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반기별 보고" 라고 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정활동 실적보고" 라고 해가지고, 시·군, 본청, 전체 것을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 대비와 금년 대비를 해서 보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보도자료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 소관부터는 지금 시간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15시 40분)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부터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3년도 대비 '92년도의 학생수 증감 및 교육공무원 임용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및 학급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1일 현재 학생수는 유치원이 1만 6,124명, 국민학교가 14만 3,194명, 중학교가 7만 7,594명, 고등학교가 6만 8,883명, 특수학교가 1,039명 등, 총 30만 6,834명으로 '83년도에 비해서 7만 6,0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급수는 유치원이 608학급, 국민학교가 4,196학급, 중학교가 1,684학급, 고등학교가 1,420학급, 특수학교가 105학급해서 총 8,013학급으로 175학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립학교가 포함된 총 숫자입니다.

이중에서 공립학교만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363학급, 국민학교가 4,154학급, 중학교가 1,348학급, 고등학교가 929학급, 특수학교가 33학급, 그래서 총 6,827학급으로 '83년도 7,278 학급보다 451학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92년도 현재 유치원이 272명, 국민학교가 5,160명, 중학교가 2,821명, 고등학교가 2,382명, 특수학교가 57명 해서 1만692명으로 1,05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교육 전문직은 '83년도의 162명보다 48명이 증가해서 현재 210명입니다.

그리고 '92년 4월 1일 현재 일반직에는 기능직포함해서 국민학교가 1,221명, 중학교가 382명, 고등학교가 419명, 특수학교가 24명,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736명 등 해서 2,782명으로 '83년보다 64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중에 기능직이 1,880명으로 410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은 901명으로 23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 학생수 및 학급수와 교육공무원 등의 증감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진단 관계는 지금 자체 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진단을 끝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보충질의 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자료를 제가 보고나서 분석을 해본 결과, 공립학교에 10년간의 학급수, 학생수의 변동과 교원전문직, 일반직

의 변동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0년동안에 교원의 증가율은 10.8%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문직의 증가율은 29.6% 이것은 교직의 전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무려 3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사무직인데, 지금 사무전산화가 되어서 참 오히려 사무직원을 어떤 기업체 같은데서는 줄이는 방향까지 나오는데, 어찌 우리 교직에서는 교원의 숫자는 10.8%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일반직은 30.2%라는 이런 대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사무전산화 같은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교원의 증가율이 10.8%밖에 안됐다." 하는 것은 그간 저희 도는 10년 동안에 특히 국민학교는 학급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본교학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지가 되고 해서 농촌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약 4백여 학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원의 증가율은 10.8%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30% 가까이 증원된 것은 각 교육청이 그전에 계가 3계가 있던 것이 1개씩 더 늘고, 또 도교육청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늘고 해서 교육청이 늘고, 학교는 중·고등학교도 또 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신설이 되면 서무직원이 2명 또는 3명씩 배치가 되고 해서, 10년 동안에 중·고등학교가 증가가 됨으로 해서 일반직이 약 30% 정도 늘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물론 제가 학급수 감소를 감안을 한겁니다.

학급수 감소를 감안해서 10.8%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다시 프로테이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그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민학교가 지금부터 10년전 '83년도에는 24학급 이상이어야만 그 일반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교원잡무 경감 차원에서 국민학교 7학급 이상은 전부 사무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지금 6학급도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까 말씀하신 168학교의 6학급 이하 학교가 남아있습니까라는 것보다 보니까 국민학교에 일반직 정원이 많이 들

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물론, 단순 비교로 프로테이지를 갖고 따지면 좀 차원 낮은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본질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일반직도 필요하니까 국·과도 더 증설을 하고, 자리도 더 늘리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교사를 더 많이 뽑아서 더구나 적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교사를 더 많이 뽑아서 보다 더 교육의 질을 높여 주는게 시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T.O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교육부 하고도 관련을 맺으면서 국가정책적인 차원이 높겠지마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첫째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이다, 교사를 빼놓고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연목구어" 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좀더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다가 중점을 두셔야지, 일반직의 자리를 자꾸 늘려서 증설한다는 것은 사무전산화에도 설명이 잘 안되고 하는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참고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전국에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4대 33 입니다.

즉, 37명의 사회체육과장이 있는데, 그중에 전문직은 4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 33명이 전부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을 떠나서 좀 교육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도 내에서도 이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교육체육과장인데 사회교육이라면 "교육" 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그 반대로 된다면 모를까 어떻게 4명 밖에 안되고 일반직이 33명이다, 이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 교육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먼지도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인사담당자들 우리 충북도만 유별나게 6급을 두어가지고서 여러가지 갈등요인을 유발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보다 좀 그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7급으로 좀 내려달라, 그러면 갈등요소가 많이 해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요구를 여기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학생회관의 전문직이 있는데 여기 T·O 가 내려왔는데도 안된건가, T·O 가 없어서 못

하는 건가, 발령이 났는가 궁금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전문직이 4명이고, 일반직이 33명인 것은 아마 사회교육체육과장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일반직으로 요구한 도가 33명이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은 지금 인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끝나면 여기에 과연 6급이 필요한건가, 그리고 또 6급이 필요치가 않고 7급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여러가지 각도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해서, 그때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을 검토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의 전문직은 이미 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잘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질의에 찬동을 하면서 내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어요.

지금 교육부가 일반직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문직은 요구를 해도 국가직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지금 주지를 않고 있고, 일

반직은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일반직으로 증원이 돼서 내려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서부터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지방사무관 T·O 가 지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 문제하고, 또 학생회관에 전문직이 발령이 났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는 학생회관이 개관했을 때 일반직 T·O 는 전부 내려왔는데, 전문직은 하나도 안내려왔어요, 하나도 안내려와서 개관하여 운영을 하자니까 할 수 없어서 단재교육원하고 연구원에서 하나씩 차출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관한 자리에 까지도 전문직은 안주고, 요구하지도 않은 사무직은 일반적으로 선심을 쓰며 내려보내는 이런 저의가 뭐냐, 이런 저의가 바로 지금 권석풍위원이 발언한 그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 물론 일개 행정관리담당관으로서 답변하지 못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묻는 것은 분명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에 공보담당관실의 사무관 T·O 를 요구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요구한 것이 왔느냐, 요구하지 않은 것이 왔느냐?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공보담당관실에 그 5급이 하나 배치된 것은 지난 해에 공보담당관실이 발족되면서 거기에 공보담당관 이외에는 5급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가 아마 어려움이 있게 되자 각 시·도가 공보담당관실에 사무관, 그러니까 5급 1명씩을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각 시·도가 나중에 절차는 밟아가지고 교육부에 증원 요청을 해서 1명씩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그렇게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사무관 발령을 안합니까?

필요치 않으니까, 그 자리가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발령을 안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도 필요치 않으니까 발령을 안하고서도 충분히 공보담당관실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장을 받은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회관은 지금 개관을 해놓고서 필요해 가지고 반대까지 차출해서까지 쓰는 이 마당에 거기는 자리를 안주고 요구하지 않은, 필요하지도 않은, 없어도 되는, 이런 자리에는 일반직을 갖다 배정을

해놓고, 적어도 사무관이라면 중견이예요, 일개 연구사를 달라는 자리도 안 주면서 필요치도 않는 사무관은 일방적으로 턱턱 내려 보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이것은 일개 행정관리담당관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지만 이와같이 교육정책에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교육부에서 지금 국가직, 전문직에 대한 증원요청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부터 계속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으로 전국에 약 한 천여명 인가를 증원요청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무처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문제 등,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어려워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 그 사무관 T·O 가 지금도 한 자리 비워 있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비워있다고 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보담당관실의 증원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관 시험요구를 할 당시에 제가 인사계장을 그 때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험요구를 할 당시에는 정원이 오지를 않았었고, 사무관 시험요구를 한

뒤에 왔기 때문에, 여기 금년에 5월달에 시험을 본 사무관 시험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 의장 김영세 : 더 보충해서 물을테니 확고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타도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그것을 요구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지, 충청북도에서 자생적으로 그 T·O 를 늘려 달라는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애초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니고.....

○ 의장 김영세 : 분명하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나중에 타도에서 하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타도에서 추가로 요구했으니까, 충청북도도 필요할테니까 요구하라, 이래서 받은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지금 공보담당관실 기능에 사무관이 없어서 지장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업무에 지장은 기자실에서 어떤 대화관계, 기타 대외적인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 의장 김영세 :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답변해요.

이상 마치겠어요.

또 다른 분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아까 그 교원의 증가율과 일반직의 증가율을 단순비교를 해서 교원 10.8%, 일반직은 30.2%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학급수 감소 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비가 될까, 이것을 다음에 한번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나중에 서면자료는 내드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증원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학교 7 학급 이상에 일반직을 전부 배치할 함으로 해서 기능직 포함해서 약 한 300명 가까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 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예.

○ 의장 김영세 : 예, 이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잠시 침묵)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총무과장 고일영 :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학교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 한 학교에 이동없이 10년, 20년씩 계속 근무하는데 인사이동이 가능한가 인사 이동을 시켜 효율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30조에 교육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9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 전보, 승진 등 모든 권한이 지역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능직공무원보직관리규정 제4조에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 직위에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규정 4조의 2 에 전보의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유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소속기관장이 필요로 할 때는 계속 유예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은 생활근거지가 대

개 학교인근이고 박봉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유예 규정을 적용해서 전보 내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5월 말까지 전보내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의 침체와 그 타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보충질의 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현재 각 초·중·고등학교의 기능직, 또는 고용직이 다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지방이나 비교적 다 같다고 봐지겠는데요, 이 기능직이 한 학교에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15년씩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학교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온 신규 선생님들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아주 터줏대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점으로 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우선 배치한다는 것은 저도 긍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에 10년이상 15년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기능직 공무원도 인사권자가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동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어떤 학교의 기능직, 고용직은 이동을 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교장이 자기 혼자 내신을 낼 수도 없고, 내신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박 표가 나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장이 내신을 내질 못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참 10년에 바꾼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자기 연고지에 이렇게 한 10년, 15년씩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학교 같은데서는 그 사람이 터줏대감이에요, 동네사람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들어요.

이래서 어설피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데모도 하고 그래요.

이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생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한 학교에 10년, 15년,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두사람을 꼭 교장이 바꾸고 싶어도 그것을 내신을 못하고, 또 다른데 교장들도 자기네 잘하는 사람을 내신을 냈다가는 잘 못하는 사람이 올까, 싶어서

또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아까 그 공무원 증감 현황에 대해서 "7학급 이상에 일반직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즉 학교현장에다가 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일반직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소요가 많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기관별로 봤습니다.

'83년도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이 517명이었습니다.

10년 뒤인 '92년도에는 735명으로 늘었습니다.

218명이 늘었어요.

순수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이 아니에요.

증가율이 무려 42%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 가만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바꿔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총무과 소관부터 우선하세요.

○ 권혁풍 위원 : 그렇습니까?

○ 의장 김영세 : 예, 총무과 소관 없으

시죠?

총무과 답변할 것 또 있죠?

○ 총무과장 고일영 : 예, 있습니다.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숙직 제도를 폐지한다는데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가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언제부터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숙직을 전면 폐지한다고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4일에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인 총리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령 제2조에 "초·중등학교의 당직에 대해서는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른 규칙으로 정한 것이 교육부 훈령으로 돼있는 초·중등학교 당직규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총리령이 개정이 되면 마땅히 그 교육부 훈령인 당직규정을 개정해야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훈령은 폐지를 했습니다.

9월 9일자로 폐지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시·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공문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령으로 돼있던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숙직을 할 때, 한달에

1회 이상을 초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 한 사람이 주당 1회를 초과 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시설을 강구하고, 당직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보안시설이 뭐냐하면 무인 경비 시스템하고, 자체방범 시스템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방범 시스템은 시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해서 학교는 58개교가 해당이 되겠고, 시설비가 6,4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교당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년에 1억 9,296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용역비는 용역을 맡은 회사에 교당 180만원씩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자체방범 시설을 할 때에는 82개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2억 7,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교당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실고는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비가 4억 천만원가량 소요되고, 용역비가 6,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니다.

합해서 4억 6,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인경비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에 그 시설비 6,480만원은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 교원 당직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없애는 차원으로 '93년도 예산에 가급적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보충질의 없으세요?

○ 박병해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숙직을 하는 숙직비하고 거기 소요되는 모든 경비하고, 이것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고일영 : 예, 딱 맞습니다.

그 용역비 180만원이 한 사람 1년 숙직비용입니다.

○ 박병해 위원 : 현재 각 국민학교에는 이미 숙직을 안하고 전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따진 것인가요, 그것은 빼고 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국민학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학교는 이미 당직전담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박병해 위원 : 중·고등학교에 시설비가 4억 2,5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도시에만 해당되는 시설비인가요?

○ 증무과장 고일영 : 이 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6,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시 지역에 시설비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시설비가 적게 드는 대신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3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 박병해 위원 : 가령 이와같이 선생님들이 숙직을 안하고 과학기재에 의해서 그야말로 참 무인경비 노릇을 해준다면, 가령 우리 청주중학교를 예를 들어 따져보면 교무실이나 또는 서무실이나, 과학실, 기술실 등 여러가지 이런 중요한데에는 설치를 하겠죠?

○ 증무과장 고일영 : 예.

○ 박병해 위원 : 그러면 학교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아무렇게 떠돌고 다니고, 파손하고 다니도 그것까지도 이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 증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박병해 위원 : 그렇다고 할 때 학교

는 그야말로 저것으로 보안이 될 것인가?

○ 증무과장 고일영 : 그래도 한 사람은 숙직을 해야 됩니다.

○ 박병해 위원 : 전화 받는 사람.....

○ 증무과장 고일영 : 예, 전화 받는 당번 겸 관리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 박병해 위원 : 한 사람은 숙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 준다.

○ 증무과장 고일영 : 예, 그리고 시 지역에 이 교당 90만원이라는 것은 12군데에 이 감지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더 많을 때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학교에 어느 정도 범위를 하게 됩니까, 이게 교실마다 전부를 하는 건지.....

○ 증무과장 고일영 :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군데 정도 감지장치를 시설을 하는 건데, 중요한 부서가 많은 학교는 아주 여러군데에다가 이 감지시설을 해놓아야 되겠죠.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데가 금융기관, 또 보석당, 이런데 설치를 해놓아요.

저희 금고같은데도 이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침범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게 서울의 공사까지 신호가 올라가요.

그러면 저기도 신호가 가고, 경찰서도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에 신호가 같 것 같으면 즉각 관할 경찰관서에도 연락을 하고, 또는 그 책임자들 집에까지도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데 금융기관이나 금은보석당 같은데는 그냥 그 건물만 설치 하기 때문에 어디를 침범하던지 신호가 가게 되어 있지만, 이 학교 같은데는 그 중요한 부서들만 아마 시설해야지 전체에는 시설을 못하지 않겠나 싶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런데 이게 학교같은데는 이 숙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역시 중요한 부서, 아까 얘기한대로 과학실이라든가, 교무실이라든가, 서무실이라든가, 이런데 밖에 시설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경찰서하고 관계되게 크게 해서 그 공사같은데 까지 신호가 가게 하려면 이 경비가 많이 들어요.

아마 이것 가지고서는 잘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최소한 경찰서 정도에 신호가 갈 정도밖에 안되는 건가 이렇게 봐지는데.....

○ 총무과장 고일영 :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우선 그 경비 용역을 맡은 용역업체에

벨이 울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벨이 울림과 동시에 소방서까지, 만약에 이 화재탐지기에 감지가 되면 소방서에도 연락이 간답니다.

그리고 한 5분 이내에 출동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같은데 중요한 부분에 몇 군데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 숙직 직원이 혼자서 큰 학교같은데 숙직한다는 것이 평장이 힘들어요.

날마다 교대해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숙직 직원을 많이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숙직 직원이 많이 있지 않고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 사람씩 숙직하는게 꼭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숙직 직원이 그래도 학교에 있어야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대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 또 학교 주변을 경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더 총무과 소관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답변 다 끝났죠?

- 증무과장 고일영 : 예.
- 의장 김영세 : 더 있습니까?
- 증무과장 고일영 :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관리담당관 미안합니다마는 보충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또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기관에 일반직 공무원의 증감현황이 '83년도에는 517명이었는데, '92년도 735명으로 218명이 증원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직 포함해서 인데, 일반직 속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또 기능직도 해서 총 망라해서 여기에 그 수치를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10년 동안에 우선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기관이 있었습니다.

단재교육원이 '86년도 신설이 됐고, 진천에 있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이 '88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또 학생회관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지역 시·군별로 학생도서관이 1개소씩 다 그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야영장도 각 지역별로 또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는 인사담당자가 한 명씩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인사담당을 하는 보조기능직이 1명 들어 갔습니다.

또 각급 학교의 급식학교 증설로 인해서 지고 급식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육청에 보건행정직이 또 1명씩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이렇게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설되고, 증원된 기관이 많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일반행정직이 기존에 있던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위원회 직원은 별로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약 기능직이 한 50%, 반정도 됐고, 나머지 한 보건직, 행정직 포함해서 약 50%, 약 한 100명해서 한 200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보충질의 있습니까?

○ 권혁풍 위원 : 예, 물론 신설기관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기능직도 포함한 일반직으로 해서 42%까지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물론 학생회관이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됐다고 하면 거기에 물론 일반직만 증가된게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직도 또 함께 포함됐고,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비율을 따지는 것이지, 하나 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 교원과 전문직과 일반직, 그걸 또 종적으로 교육행정 기관을 순수하게 놓고 볼 때, 너무나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인력제도가 아니냐, 인력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결과를 아직 두고 봐야 알겠습니까마는 우선 답변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걸 학생회관에 일반직 늘었으면 전문직은 안늘었겠습니까, 다 늘었죠.

그렇게 놓고 볼 때 그게 수급이 안가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그게 신설 기관에 각 정원을 보면 전문직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기능직이, 학생도서관 확충에 따른 학생도서관, 또 단재교육원, 종합야영장도 그렇고 기능직이 거의 한 60-70%가 기능직입니다, 그 정원에.

그렇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권혁풍 위원 : 그 뭐 전산화 같은 것은 하나하나 별효과 없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도서관 같

은데는 각 실별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기능직으로 대출업무라든지; 거기에 보조적인, 보충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사무직을 오히려 덜 뽑고 하는 추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계만은 그 반대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하는 것이 또 의문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전산업무가 더 좀 확대돼서 그 업무를 전산처리로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이 하게 되며는 이런 인력같은 것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도록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많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 시설과장 박성근 :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김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냉·난방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을 두장씩 드렸는데요, 그 위에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본청 노후배관 교체 및 수선공사, 본청 수선공사 미집행 현황" 참조)

본청 노후배관 교체 및 수선공사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확보된 예산은 4억 7,485만 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91년도 명시이월액이 2억 4,500만원, 또 금년 1회 추경액이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중앙 화장실 수선비가 1,300만원, 또 후관과 본관이 연결되는 공동구 부분에 후관으로 난방시설을 공급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후관경비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3,185만 6천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4억 7,485만 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족액은 2억 5,014만 4천원인데, 이것은 총 소요액에서 확보액을 감한 것입니다.

이 2억 5,014만 4천원중에는 1억 441만 2천원의 냉방기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판급액입니다.

이 판급액을 그 다음 실부족액에서 공제를 한 것은, 먼저번. 도의회에서 2억 5천만원을 감하면서 그 냉방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도 내년 여름에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을 적에

1억 4,573만 2천원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 다섯번째 실부족액중에서 확보된 것을 거기다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실부족액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당초에 이 배관 교체 공사의 입찰을 보고나니까, 그 잔액이 1,92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총무과, 또 상황실, 부속실, 교육감님실, 이렇게 해서 그 천장의 텍스(Tex)를 새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실이나 총무과를 뜯는 과정에서, 그 라인이 여러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전체를 뜯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뜯는 사람들이 "그렇게 뜯을 필요가 없다, 가운데만 뜯어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텍스를 재활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잉여가 되는 금액이 1,345만 5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후관 입찰잔액,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부터 그 설계잔액을 가지고 적용을 했고, 또 다섯번째에서 후관입찰 잔액이라고 한 것은 후관을 그 후에 입찰을 본 뒤 실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7만 4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6,248만 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그러면 실제 추경에 요구할 금액은 8,32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번째 장을 보시면 본청 수선공사 미집행 현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요구액이 8,325만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집행 내역으로 분류를 해보면 건축부분과 기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부분에는 천정텍스, 복도부분에 천정텍스를 복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3,784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그 철거한 부분의 전등을 전부 보수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8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합치면 4,614만 5천원이 건축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계부분에서는 보일러 전기공사가 982만 9천원, 열교환기가 526만원, 스팀 및 냉온수 헛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92만원, 또 응축수탱크외 3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967만 천원, 밸브류 및 배관이 642만 6천원, 이래서 3,710만 6천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내역의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부분에서는 그저 비어 있는 대로 지내면 되겠습니까마는 이 기계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난방이 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냉방기기는 내년도 연초에 반영을 해주시면 봄에 공사를 해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금년 겨울을 내려면 이 기계부분은 꼭 돼야되고, 또 건축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복도 천정부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조명기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32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현황이라는 것이 그저께 세장으로 드린 것 중에 둘째 장을 보면 나오니다.

(별첨된 "입찰현황" 참조)

먼저번 추가계약을 하면서 어째서 거기에 냉방시설이 포함이 안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추가입찰의 업자 도금액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관금액 1억 441만 2천원만 관급으로 주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찰현황을 보시면 5억 4,500만원이 설비업자가 계약이 됐고, 전기 계약액이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관금액에 냉방기기를 포

함을 해서 1억 3,62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925만 2천원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합치면 7억 2,500만원이 다시 맞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사수위원 위원석에서)

○ 김사수위원 : 내가 먼저.....

○ 의장 김영세 : 예, 제안자가 있으면 제안자 먼저 하세요.

○ 김사수위원 : 도의회에서 2억 5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깎았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여쭙어 보겠는데, 그러면 현재 5억얼만가 입찰본 그 공사내역에는 현재 냉방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도 안들었나요?

○ 시설과장 박성근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 방법을 과거의 수직식에서 수평식으로 바꿔쳤고, 또 그 라인을 냉방과

난방을 겸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냉방시설중에 냉방기, 냉동기 이것만이 옥상에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것만 관급을 저희들이 사서 주면 완전하게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김사수위원 : 이상일위원님이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래요?

○ 이상일위원 : 저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 김사수위원 : 이게 사실과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한꺼번에 해야 공사비가 절약되고,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냉방비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무자들 답변 얘기가 "한꺼번에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또 뜯고, 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어떻게 되었던 그때 말씀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현재 시설과장이 기술계통에 책임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냉방을 한다고 해서 파이프나 뭐 이런 것을 더 증설 안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판급액에, 먼저 번에 나눠준 그 자료를 보면 판급액이 1억 3,62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억 441만 2천원을 제하고 나머지가 3,185만 6천원, 이것이 판급액입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또 이 후관에 3,185만 6천원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 같아요?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것을 당초에 후관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3,200만원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판급자재 내역이 거기에 표기된 대로 3,185만 6천원, 이것만 가지면 판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 김사수 위원 : 아까 후관 관계는 판급이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후관 관계는...

....

○ 시설과장 박성근 :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확보 종류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후관 예산중에서도 쓰고, 또 중앙 화장실에서도 쓰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공사를 한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똑 떨어지게.....

○ 김사수 위원 : 똑바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게 후관 공사하고, 연구원 짓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맞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거기서 공사비가 3천 백만원인지, 그러면 판급자재인 판급액이라고 그랬으면 판급하는 자재의 대금 아니에요, 3,185만 6천이라는 것이, 이것을 뺄 것 같으면 떨어지는데.....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것은 보일러하고, 지금 아래층에 가보시면 모타 종류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

○ 김사수 위원 : 관련이 있다, 이겁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김사수 위원 : 관련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본관 보일러에서 후관으로 냉·난방시설을 전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파워프린트를 이 본관에다 두고, 여기에서 냉방이든, 난방이든 전부 이 지하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 입찰잔액이나 예산을 일부 돌려쓰는 구실을 마련한 겁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럼 이게 판급액은 아니죠?

○ 시설과장 박성근 : 관급액입니다, 그것이지.

○ 김사수 위원 : 관급액이예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래서 그 본관에 관급을 하는 것을, 이 보일러 제작하는 기간이 약 두달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 후관 그 예산으로써 그것을 확보한 겁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래서 후관이라는 것을 붙였다 이것이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1억 441만 2천 원에 대한 그 관급 내역은 뭐예요?

○ 시설과장 박성근 : 그 내역은 냉동기입니다.

○ 김사수 위원 : 냉동기에 한.....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냉동기하고 냉각 탑, 그것이 하나의 셋트로다 돼가지고 냉동기는 지하에 위치되겠고, 냉각탑은 옥상에 있게 됩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래 이것을 관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것은 주요 자재를 관급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한 이윤, 공가 잡비가 체감이 조금 됩니다.

○ 김사수 위원 : 글썄 이것을 5억 4천 얼마에 포함 안시키고 했다는 것은 예산절

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과연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떠나서,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됐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추경을 해서라도 좌우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추경소요액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난방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제2차 계약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제2차 계약은, 그 강당 수선하는 본청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돌려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4천여만원어치 천장보수하는 것은 또 돈이 모자라서 그것은 못하고 그 나머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공사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추경요구액을 8,300만원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솔직히 이것은 지금 시설 응찰자가 좀 깎는다면 모르지만 저희들 힘으로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차 계약까지 다 봤다며 또 뭘.....

이 이상 다 줄일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어떻게든 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이 소요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냉방예산,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냉방문제는 내년도 본 예산에 꼭 세워주셔야만 내년 여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차원하고 또 상당히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냉방기를 사용 못한다 하면 그것은 설치로써 끝나고 말게 되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 뭐가 설치로만 끝나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산을 세워주셔더라도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운영을 안하는 방법, 그것도 있겠죠.

혹시나 그 정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볼 때 이 건 한번 좀 더 고려를 해볼 문제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도 검토를 해야될 문제니까, 이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추경을 해서 도의회에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삭감할 때 얘기는 "과대 설계가 돼있다." 이러한 이유로써 명분을 들어가지고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올려 도의회에 보내더라도 과연 이게 또 통과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동일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삭감한 것을 또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도 염려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모든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 도의회에 자신있게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먼저번도 그렇습니다.

이 2억5천만원 삭감될 때에도 그 과정에서 얘기는 있었습시다마는 꼭 해야될 사업 같으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그때 2억5천만원 통과 안됨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에 지장이 되어 있어요.

통과만 되었다면 우리 계획대로 다 돼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했을텐데, 통과가 안돼서 여러가지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심의에서 추경이 되리라고 믿습시다마는, 만약에 돼서 올릴 때에는 도의회에서 다시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일위원 보충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이상일 위원 : 예, 먼저 총소요액을 7억 2,500만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이상일 위원 : 그래서 이 공사를 할 계획을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좀 과도한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한 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금액을 삭감하면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통과를 시킨건데, 과연 이 7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건지, 또 그 응찰가격이 누가 봐도, 우리 담당자들이 봐서 업자가 담합을 해서 이렇게 비싸게 올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는 건지, 그래도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아니까 2억 5천만 원을 깎아내려도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해주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것 가지고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이상일 위원 : 그랬을 때 공사비 입찰액이나, 우리의 산출액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여기 저기 다 주워 모아서 8,300만원 모자라는 것이지 제대로 하면 1억 4,500만

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 그런데 1억 4,500만원씩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깎아내리는 건지, 우리의 그쪽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아까 감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1억 4,500만원만 가지면 냉동기, 냉각탑만 설치를 하면 다른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가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8,300만원 해서 올렸을 때, 도에서 "무슨 소리냐 얼마전에 깎아 내려 보낸 건데 무슨 또 몇 달도 안 돼서 올라오는 거냐" 해서 통과가 안됐을 때 이 공사는 올 겨울에는 난방도 못 하고 말아야 하는 건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과장 박성근 : 이 7억 2,500만원의 거액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예산규모가 당초에 6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

니다. 그 6억 8천만원에다가 여기에 추기된 천3백만원하고 3,185만 6천원을 합했을 적에 바로 7억 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7억 2,500만원의 설계 내역은 어디 판매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과의 설비파트에서 이것을 설계서부터 적산까지 전부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설계업자를 돈을 더 줄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더 주기 위해 한 것 없이, 이것을 실지 적산을 해보니까, 돈이 참 너무 많이 나와요.

이래서 이것은 다 낙찰이 된 다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어저지로 각 공사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였어요, 그래서 한 2,500만원 감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과다 실계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배관하는 것이 다른기관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지금 도청 후관에 도의회 회의실 건물을 보면, 한 4개 존(zone)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존마다 콘트롤 박스를 따로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보다 평당단가가 한 6만원, 거기는 44만원인가 들어갔고, 저희들은 38만원이 소요가 된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서도 저희들의 예산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 "이 냉동기를 관급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다른데 지장이 없이 그게 다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를 이번 공사작업에다 다 집어 넣어

놓고, 그것을 설치하는데는 아무렇게 해도 좀 지장은 조금 있겠지요, 옥상에 한번하고 지하에 한번하고 이렇게 두번의 공사는 있습니다.

다만 1층서부터 4층까지의 사무공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 되었습니까, 이상일위원.....

○ 이상일 위원 : 마지막에 그 도의회에서 통과 안될 경우에는 올 겨울은 어떻게, 난방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이것이 아까 미확보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중요부분에 가서, 전부 보일러실에서 그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는 경우에는 난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내가 보충질문 하겠어요.

우선 시설과장에게 하고, 관리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과장에게 하는 질문은, 여기 부족액 8,325만 천원을 추경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지금서부터 추경작업을 하면 우리가 15일이후에 하게 되

고, 도의회에서 11월달에 통과되고, 실제로 이 예산의 집행은 12월달이나 가야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의장 김영세 : 12월달이나 가서 하는데, 굳이 금년 회계연도에 삭감된 것을 다시 재론하지 말고, 내년 신년 예산에다가 넣어서 1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한달 차이예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달라지니까, 채무이월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논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 의견으로는 이것은 업자와 절충을 해도 가능한 것이고, 또 정히 돌과구를 열어 준다면 이 공사는 동절기라고 중단할 필요가 없는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 해주면 실질적으로 업자가 내용적으로 시공은 거의 다 될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추경에서 다룰게 아니라 한달 차이인데 신년도 예산에다가 넣으면 아주 편리할 것이고, 피차 부담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난방의 시점을 10월 2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 10월 20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난방을 시작해서 11월초

에 본격 난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달에 추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참 저희들이 받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경에다가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도의회를 통과해서 오면 12월달이나 이 예산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미 난방장치 가동하기에는 때는 늦었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니까, 아마 시동은 시켜주고서 돈은 12월달에 가 받을 수도 있겠죠, 공사기간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달 차이인데 무리하게 금년도에 추경을 하지 말고 신년도 예산에다가 넣으면 우리 교육위원회도 부담을 안느끼고, 도의회도 부담을 안느끼고, 또 여러가지로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돌과구는 채무이월이 안되니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 그 방법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다가 넣어 주면 불과 한달 차이인데 굳이 이것을 한달 차이를 못 참고 꼭 이렇게 해야 옳으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 김사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시설비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아까 말씀드릴대

로 우리 본청 그 보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글썄.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전용"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당겨서 좀 쓰고, 추경에서 그것을 채워서 그 사업을 또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글썄, 법규사항으로 보던지, 예산회계법으로 볼적에 그 과목에 예산이 있으면 공사는 집행 해도 뭐 별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공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김광수 부의장 위원석에서)

○ 부의장 김광수 :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부의장 김광수 : 이러한 발언은 지금 이자리에서 할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애가지, 여기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아니 추경에다 요구를 한다고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다음에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내가 관리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배관교체 입찰과정에서 1,925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이 공사에다가 재투입을 한다 이랬어요, 재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회계법상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사용목적에 의했을 적에 이 삭감액이 전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동일 공사에서 입찰에서 낙찰된 차액을 설계 변경도 안하고 그 금액에다가 다시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것 어떻게 해석해요.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 아니, 그건 관리국장이 재무관이지, 시설과장 소관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후관 입찰금액에서 삭감된 것은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설 설계 변경이 되는거니까, 그런데 입찰당시에 삭감된 1,900만원 재투입이 그 공사에 설계변경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이것은 재투자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없어지는 내역이 돼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왜냐하면 총액에

서 각인 금액이 어찌피 공사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설계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김영세 : 이것이 내 얘기는 이거예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동일공사 내에서 삭감된 금액은 동일공사에 다시 집행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공사비가 삭감돼서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그냥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의장 김영세 :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 내가 지금 질의 한거요, 다음에 추경안에 만일 나오면 그때 짚고 넘어 갈테니까, 그때 얘기 합시다.

설계변경을 하던지, 타전용의 목적에 그 시설비가 전용될 수 있지, 동일공사 내에서 거기서 삭감된 금액은 동일공사에 그냥 전용이 안돼요.

○ 김사수 위원 : 이게 추경에서 또 한번 다루어야 될 성질이고 하니까.....

○ 의장 김영세 : 아 글썄 내가

○ 김사수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시

죠.

○ 의장 김영세 : 예,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여기 부교육감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부교육감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재희위원이 한 것도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답변해 주시죠.

○ 권혁풍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의장 김영세 : 같이 해 주시지요.

○ 권혁풍 위원 : 그러지요, 그럼.

○ 의장 김영세 : 아니 질문하세요, 먼저.

○ 권혁풍 위원 : 그렇게 할까요?

○ 의장 김영세 : 예, 질문하시고 같이 답변하시게.....

○ 권혁풍 위원 : 아까 제가 말씀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즉 지방교육자치법 3조 1항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할 때 주요사항에 장기발전 계획은 해당이 없는건가, 13조 9항과 관련을 지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공무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자꾸 또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수를 놓고 볼때 '83년도에 33만명이었던 것이 10년뒤에 25만명으로 줄어서 무려 7만 5,330명의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기가 없이 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학생수는 23%가 줄어드는데, 교육에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교원 숫자가 늘어나고 전문직이 늘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마는, 여기에 일반적인 거꾸로 순수한 교육행정기관에서 42%가 증가된다, 학생은 23%가 감소되는데 일반적인 42%가 증가된다, 더구나 사무자동화라는 이러한 사회추세를 볼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무엇인가, 잘 납득이 안갑니다.

학생 전체를 놓고 봅니다.

얼마나 질높은 봉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전보다 지금의 학생에 대한 봉사가 정말 그렇게 봉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시각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몇일간 회기중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층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한 바에 부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 사건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회위원님께서 어저께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나가봤더니 요즘에 잡부금 근절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 교장들이나, 교직원들이 상당히 경직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실례로 한 농부의 학부모가 성의 깃들인 맥주를 한 박스 가지고 와서 거기의 하객과 더불어 같이 한잔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의껏 가져왔건마는 대하는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경직된 이런 자세로써 받아들이지 않고, 격분한 끝에 그 맥주한 박스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고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맥주 한 박스나 막걸리 한 말이나, 음료수 그저 몇 박스 같은 것, 참성의가 깃들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 온 것은 그 교장선생님이 또는 전직원이 아량을 베풀어서 그 호의를, 하나의 미풍양속인데 호의를 그렇게 거절해서야 무퇴한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권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육위원회의 임무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을 해야 원칙이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또 거기에 이어서 제21조에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7조6항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7항에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항에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이 "진흥"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의 발전, 계획, 즉 거기에다가 장기를 넣어서 "발전계획" 이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장학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인 까닭에 이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창의적인, 이러한 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인력문제인데 아까 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 다만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담당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 10년동안에 일반직이 33%, 전문직이 불과 10여 프로에 지나지 않는데, 오히려 교육에 질의 높인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전문직이 더 많이 증원이 돼야 하고, 역으로 일반직은 좀 비례해서 조금 증원되어야 할텐데, 어제 반대 현상이나, 이런 질문이신데, 그 답변하는 담당관의 답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 동안에 단재교육원, 진천학생야영장, 또 학생회관, 또 각 교육청에 보건직, 또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한 야영장중에 전문직이라고는 극소수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회관에 전문직은 고작 세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인 까닭에 역시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회관의 한 예를 들더라도 일반적이 기능직까지 합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진천학생야영장도 전문직 불과 몇 명되지 않습니다.

전부 일반직입니다 또 기능직이고.

또 지역교육청에 학생야영장 거기는 전문직이 딱 한명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직입니다.

이것도 교육을 뒷받침 해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지적인, 또는 전인적인 교육차원에서 지도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원,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이것도 하나의 교육에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이렇게 기관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상승이 된 것이고, 또 아까 지적하신 "10년동안에 한 7만여명의 학생수는 줄었는데, 역으로 이렇게 일반직만 증원이 됐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외국의 실례는 한 학급에 20명내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에는 학생수가 자꾸 감소가 돼서 불과 한 학급에 10명 내외가 한 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전문직 정원을 한 학급에 하나씩은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위원님께서 숙직전담제하고, 6학급이하의 일반직 배치를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학급이상 일반직을 배치를 했고, 또 6학급까지도 세학교는 배치하고, 168개 학교가 아직 배치가 안됐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까 질문한 우리 권위원님 질문중에 "6학급에 이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할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다 해소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상 일반직이 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군지역에 또는 규모가 큰 학교의 일반직을 감축을 해서 그쪽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큰 학교는 큰 학교나름대로 업무분장이 따로 있고, 작은 학교일수록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6학급 소규모 학교에 일반직이 꼭 필요하기는 참말로 필요합니다.

그 당위성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서도 그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보충질의 하시

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 예, 먼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말씀을 27조를 들으시면서 "교육과정의 진흥이라든가, 과학기술의 진흥, 사회체육의 진흥이라든가, 이런 진흥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7조가 엄연히 조문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관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 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으로서 집행하라는 뜻이지, 심의·의결까지 다 교육감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 심의·의결은 교육위원회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이상, 교육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 주민의 의사를 모든 교육에다 반영시키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위원회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소외를 시켜 놓고, 도외시 해 놓고 그냥 집행하겠다, 이게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죠.

장학계획도 역시 교육의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역시 전문가인 집행

기관에서 섬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역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년도부터 수학능력고사로서 입시제도를 정책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일일이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아니 전문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 그렇지 않고.....

○ 권혁풍 위원 : 교육위원도 어디까지나 15년 이상의 교직자가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나온 겁니다.

전문성에 상·하가 물론 있겠지만은 교육위원들이라고 해서 교육에 전혀 문외한 자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심의·의결할 정도는 될 것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한을 갖다가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3조 9항에 엄연히 기타 사항에 나와 있고, 또 3조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해서 그렇게 하느냐.....

○ 부교육감 박동기 : 저기 권위원님,

알겠는데요.

이것은 더 우리 심층연구해서 토론에 부치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보고, 아까 전제에 제 사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권위원님 보충질문에 내가 부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한 요지대로 우선 먼저 교육자치의 본질이 교육을 주민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규정의 유·무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항의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그 기본 정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에는 재정수요가 따라야 됩니다.

더군다나 장기계획에 그 예산수요가 안따릅니다, 재정수요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규상으로도 그 재정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 해석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 좀 심도있게 답변을.....

○ 부교육감 박동기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병해 위원 : 저 기타사항으로 하나.....

○ 의장 김영세 : 예.

○ 박병해 위원 :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장기계획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원대학교 학원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실왕실래가 되고 10월 5일까지 해결을 하라 하는 교육부의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청에서 이런데 특히 관심을 같이 가져야 할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때문에 뭐 우왕좌왕 떠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거나, 긴 얘기를 빼고 알맹이만 얘기를 해 본다면 저학생들은 거기 가고 싶어 간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여기서 강제로 보냈지, 그런데 저게 만약에 부실학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동요가 됐을 때, 지금 크게 동요는 없으나 그 재정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도 일부 학부모들은 말이 많아요, 더군다나 저것이 내년도 입학고사를 봤을 때 개중에 우리 아이들만은 거기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할거나,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몇 분들도 거기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p>차후 수습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가서 얘기를 해서는 늦습니다.</p> <p>그래 지금부터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근심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p> <p>○ 의장 김영세 : 저 박위원님, 그 질문 지금 답변을 구하는 겁니까, 부탁입니까?</p> <p>○ 박병해 위원 : 답변은 지금 하지도 못하지요.</p> <p>○ 의장 김영세 : 그러니까 부탁이지요?</p> <p>○ 박병해 위원 : 예, 이다음에.....</p> <p>○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기타 안건 처리의 순서입니다.</p> <p>협의할 내용이나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석 잠시 침묵)</p> <p>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예, 더이상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이상으로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언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7시 15분)</p> <p>2. 기타 안건 처리</p>	<p>(17시 16분 폐회)</p>
<p>○ 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9명</p> <p>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p> <p>○ 본청 노후배관 교체 및 수선공사 : 별첨 5.</p> <p>○ 본청 수선공사 미집행 현황 : 별첨 6.</p> <p>○ 입찰현황 : 별첨 7.</p>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14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2. 9. 25. - 9. 28. (4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 25. (금) 14:3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9. 25 - 9. 28. (4일간)
9. 26(토)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9. 27(일)	휴 회	
9. 28(월) 14:0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기타 안건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1
----------	----------

제출년월일 : 1992.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 정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법률 제4473호 : '91.12.31.)의 개정에 따라 " 의사담당관 " 을 " 의사국장 "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용어의 정의중 본정의 " 의사담당관 " 을 " 의사국장 " 으로 변경

3. 개 정 근 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사국의 설치등)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직)

4. 조 례 안 : 별첨

5. 기 타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생략)</p> <p>제2조 (정의) ----- -----</p> <p>1. 본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u>의사담당관</u>을 말한다.</p> <p>제3조 - 제5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직</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조 :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정의) ----- -----</p> <p>1. 본정 : ----- ----- ----- <u>의사국장</u> -----</p> <p>제3조 - 제56조 :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직</p> <p>제1조 (시행일) -----</p> <p>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1호중 "의사담당관"을 "<u>의사국장</u>"으로 한다.</p>

관계 법령(부분)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473호 : '91.12.31.)

제22조 (의사국의 설치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996호 : '92.7.31.)

제3조 (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별첨 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안 번호	14 -2
----------	----------

제출년월일 : 1992. 9.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나. 변경내역

1) 취득

(단위: m²/천원)

구분	수 량	금 액	비 고
건물	2,028.0	930,000	

2) 처분

(단위: m²/천원)

구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3,308.0	209,522	
건물	277.4	30,116	

3. 제안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92. 취득, 처분대상재산 목록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199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수량	주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대 상 재 산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비 고
	지 목 (구 조)	소 재 지						
1	철·콘·슬	청주시 산남동 4-11	2,028	930,000	4/4 분기	교육연구원 취 득		공개경쟁 입찰
계	건 물		2,028	930,000				

1992년도 처분대상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m²/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처분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각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구조)	소재지						
1	과	진전읍 신정리 756-1	28,331.0	41,760	4/4분기	불용토지		진전농고
2	도	정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 -3외 3필지	627.0	14,421	"	미원-조정간 지방도확포장 공사편입	충청북도 지사	미원공고
3	학	영동읍 부용리 42-1외 5필지	28,580.0	136,703	"	영동-부용간 도로편입	영동군수	영동농공고
4	학	진전읍 신정리 662-6외 1필지	275.0	16,638	"	교성-문덕간 도로편입	진전군수	진전상고
5	시.벽.스	영동읍 부용리 42-1	77.5	14,725	"	영동-부용간 가로축조사업 편입	영동군수	영동농고 영동농고 사택
6	목조.외집	옥전읍 금구리 85	40.0	3,881	"	노후		옥전공고 사택
7	시.벽.스	"	63.0	2,336	"	증축고실부지		옥전공고 옥전공고
8	시.벽.유리	"	24.6	516	"	노후		옥전공고 옥전공고
9	시.벽.슬	증평읍 조종리 11-8	44.54	5,857	"	노후 고실 민특별 증축부지		증평고 증평고 상고

관계법령 발췌서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3
----------	--------

발의년월일 1992년 9월 일
 발 의 자 박병해 교육위원
 외 3인

1.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액이 평균 10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위원의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비지급 기준액 인상

- 현지교통비 : 4,000 - 4,500원 → 4,500 - 5,000원
- 숙박비 : 13,500 - 16,000원 → 15,000 - 17,000원
- 식비 : 9,000 - 10,500원 → 9,500 - 11,000원

나.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현지교통비외에 식비도 지급

3. 예산조치

추후 추경시 반영

4. 참고법령(내용별첨)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1항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 정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 을 " 정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 장					갑 지	갑 지	갑 지	
부 의 장	1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5,000	17,000	11,000	800
위 원					을 지	을 지	을 지	
					4,500	15,000	9,500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구

1.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간지"는 도정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종주 시, 이리시, 문산시,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포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별표 2] (생략)
[별표 3]
위원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저교통비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기금을 모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1. "간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정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간지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현행과 같음)
(삭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17일부터 적용
한다.
부 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17일부터 적용
한다.

(참 고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①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별표 5 】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시· 도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시· 군· 자치 구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500	14,000	10,500	800

비고 :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7조의 2, 제17조의 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별첨 5)

본청 노후배관 교체및 수선공사

=====

- 1. 총 소 요 액 : 725,000,000 원

- 2. 확보 예산액 : 474,856,000 원
 - 가. '91. 명시이월액 : 245,000,000 원
 - 나. '92. 1회 추경액 : 185,000,000 원
 - 다. 중앙 화장실 : 13,000,000 원
 - 라. 후 관 : 31,856,000 원

- 3. 부 족 액 : 250,144,000 원 (냉방 - 관급 104,412,000원 포함)

- 4. 실 부 족 액 : 145,732,000 원 (냉방 104,412,000원 제외)

- 5. 실 부 족 액 확보 : 62,481,000 원
 - 가. 배관 교체 및 수선공사 입찰 잔액 : 19,252,000 원
 - 나. 천정 TEX 재활용 : 13,455,000 원
 - 다. 후관 입찰 잔액 : 29,774,000 원

- 6. 추 경 요 구 액 : 83,251,000 원

(별첨 6)

본청 수선공사 미집행 현황

0. 미집행 공사 금액 : 83,251 천원

0. 미집행 공사 내역

1. 건축부분

· 천정 텍스 복구 : 37,840 천원

· 전등공사 : 8,305 천원

소 계 : 46,145 천원

2. 기계부분

· 보일러 전기공사 : 9,829 천원

· 열교환기 : 5,260 천원

· 스팀 및 냉온수 헷더 : 5,920 천원

· 음축수탱크외 3종 : 9,671 천원

· 밸브류 및 배관 : 6,426 천원

소 계 : 37,106 천원

(별첨 7)

入 札 現 況

總 價 契 約 額 : 545,000,000 원

電 氣 契 約 額 : 24,480,000 원

官 給 額 : 136,268,000 원

入 札 殘 額 : 19,252,000 원

計 : 725,000,000 원

